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이자비용공제 제한

ACTION 4: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이자비용공제 제한

---

번역의 품질과 보고서 원문과의 일관성은 번역본 저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원본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원문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종합 요약

금전의 이동성과 대체가능성은 다국적 기업집단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부채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세무결과를 얻도록 하게 한다. 다국적 기업집단 안에서 부채의 위치에 관한 조세규정의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고, 다국적 기업집단들이 내부금융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 단계에서 부채수준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금융상품들이 이자와 법적 형식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출을 만들어 이자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하, 'BEPS'라 한다) 위험은 다음 세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기업집단이 고세율 국가에 더 높은 수준의 제3자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기업집단이 그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이자비용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도록 기업집단 내부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 기업집단이 면제소득 발생을 위해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3자나 내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Action Plan, OECD, 2013) Action Plan 중 Action 4는 이자비용을 이용한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데에 있어서의 모범사례에 관한 권고사항을 요청하였다. 본 보고서는 몇몇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위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위험들을 직접 다루는 접근방법을 권고한다. 권고된 접근방법은 기업이 법인세·이자·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하 'EBITDA'라 함)의 일정 비율에 이르기까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출에 대한 순공제액을 제한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에 기초하고 있다. 적어도 이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국가들이 BEPS를 막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된 접근방법에 따르면 고정비율이 10%와 30%의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국가들이 위 구간에서 그들의 고정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업에 특정 환경에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세계적 그룹비율 한도규정(worldwide group ratio rule)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일부 기업집단이 조세목적이 아닌 사유로 제3자로부터 높은 수준의 차입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권고된 접근방법에 따르면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더불어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국가의 고정비율(fixed ratio)를 상회하는 순이자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득에 기초한 전세계적 그룹비율 한도규정(worldwide group ratio rule)은 최근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자본과 자산의 수준을 비교하는)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과 같은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s)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개별 국가는 또한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도입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국가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다국적 기업집단과 국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부당한 차별 없이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하여야 한다.

권고된 접근방법은 주로 높은 수준의 순이자비용과 높은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가지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업의 비율(ratio)가 그 기업이 속한 다국적 기업집단보다 높은 경우 그 영향은 더 크다. 이 방법은 간단하며, 기업의 순이자공제가 그 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의 중요한 특성은 기업의 순이자공제(즉,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이자비용)만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신용평가, 통화, 자본시장 접근성과 같은 비조세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국가와 기업에 제3자 부채를 집중시킨 후,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차입한 자금을 지원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권고된 접근방법은 국가들이 아래와 같이 BEPS 위험이 더 적게 제기되는 기업이나 상황에 관하여 이 규정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

- 낮은 수준의 순이자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외시키는 최소금액기준. 기업집단이 어느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지 기업집단 순이자비용의 총계에 이 최소금액기준이 적용될 것을 권고한다.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3자 대여자에게 공익적 사업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에 지급된 이자에 대한 적용배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높은 부채수준을 가질 수 있으나, 사업의 속성과 공공부분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BEPS 위험은 감소된다.
- 미래에 사용을 위한 부인된 이자비용과 (기업의 실제 순이자공제액이 최대한도에 미달한 경우)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 이는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의 능력(ability)에 대해 이익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부인된 이자비용의 이월은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투자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결손기업이, 이후 기업이 흑자전환 될 때,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인위적으로 순이자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규정(targeted rules)에 의하여 보완되는 접근방법을 권고한다. 또한 순이자비용이 없는 기업이 이자소득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이, 권고된 접근방법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한 BEPS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금융과 보험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부문에서의 BEPS 위험을 다루는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보다 기술적인 작업은 권고된 접근방법의 세부적인 분야에서 수행될 것이며, 이 작업은 전세계적 그룹비율 한도규정(worldwide group ratio rule)과 금융보험 기업집단에서 제기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상세한 운영을 포함한다. 이 작업은 2016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집단 내부의 이자금액과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출금액은 이전가격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BEPS Action Plan(OECD, 2013)의 Actions 8-10 하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Chapter I에 대한 개정사항은, OECD 보고서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OECD, 2015)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이자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한 지급이자 금액을 제공된 자금을 대한 무위험 수익률로 제한하고, 내부금융 지급액 평가 시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도록 한다. 금융거래의 측면에서의 이전가격에 대한 추가적 작업은 2016년 및 2017년 동안 이루어 질 것이다.

권고된 접근방법을 조화롭게 시행하는 것은 BEPS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능력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권고된 접근방법을 이자와 관련한 BEPS를 막는 데에 효과적이게 하기 위하여, 이 접근방법의 운영과 영향은 필요한 경우 포괄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검토를 위하여 모니터링 될 것이다.

## 개요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위한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의 활용

1. 제3자 및 특수관계자간의 이자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전략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소득이전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다. 자금의 유동성 및 대체가능성은 제한된 범위에서 부채와 자본의 조합을 비교적 간단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Action Plan 중 Action 4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예컨대, 특수관계자와 제3자에 대한 차입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받거나 또는 과세가 면제되거나 이연되는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자금조달 하거나, 기타 이자의 지급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융비용의 지급과 같은 이자비용을 활용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모범 권고사항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유형의 제한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전 작업과의 연관성을 위하여, 그리고 이전 작업의 성과에 기초하여, 금융보증, 이행보증, (은행 내부 거래를 이용한 국내 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 캡티브 보험계약 및 다른 보험계약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이전가격지침이 개발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거래 규정과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에 관한 작업과 조화될 것이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그들의 국내법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과세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인 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수취인의 관리 하에 일반적인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배당금이나 기타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는 않고, 수취인 측의 세금경감(면제, 감면, 공제 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 하에, 이러한 세무처리 상 차이는 결과적으로 부채와 자본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지급인의 세무상 차이는 국제거래의 맥락에서 부채조달에 대해 유리한 조세상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왜곡은 수취인의 과세관할에서의 이자소득의 절감을 위하여 이용되는 조세전략기술에 의해 악화된다.

3. 국가 간 거래의 관점에서, 이자비용 관련 주요 조세정책은 기업집단의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를 위해 조달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와 관련된다. 모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소유지분에 대한 수익은

참여소득면제제도, 배당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나 특혜과세와 같은 특혜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한편, 자회사들은 세무 상 국내이익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 간 대여에 대하여 과도한 공제를 활용하여 부채를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러한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를 둘러싼 기회들이 잠재적으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집단들과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집단 간의 경쟁에 왜곡을 야기한다. 이는 국내 기업집단보다 다국적 기업집단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하는 등으로 자본소유중립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1</sup> 또한 BEPS Action Plan(OECD, 201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때에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세입을 감소시키고 조세 시스템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세무상 면제되거나 과세가 이연되는 소득을 위해 조달된 자금에 대해 이자비용공제를 활용하는 것과 기업집단의 실제 순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이자공제를 받기 위하여 조세특혜를 얻는 것은 다른 유형의 BEPS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는 세율이 높은 과세관할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을,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는 과세관할에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 간 대여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은 발생시키지 않는 혼성상품의 개발; 그리고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된 세율로 과세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차입의 활용. 아래 Box 1에서는 다국적 기업집단이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 시 부채를 부담시키는 장소에 따라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여준다.

### Box 1.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영향 예시<sup>2</sup>

이 예시들은, 기업집단이, 예컨대 이전가격규정이나 과소자본규정에 따라, 이자비용의 공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해외투자

2개의 기업(A Co와 B Co)을 포함하는 간단한 기업그룹의 구조를 가정해 보자. A Co에는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외국 원천 배당금이 면세되는 국가의 거주자이다. B Co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거주자이다.

B Co는 USD 100을 제3자인 은행으로부터 10%<sup>3</sup>의 이자로 차입하였다. B Co는

이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USD 15의 이윤을 창출하였다. 이자비용으로 USD 10를 공제하고 나면, B Co는 USD 5의 세전이익과 USD 4.25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A Co가 은행으로부터 USD 100을 차입하여 이를 B Co에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B Co는 이자비용이 들지 않고, USD 15의 이윤은 과세대상이 된다. B Co는 이제 세전이익 USD 15와 세후이익 USD 12.75를 취득한다. A Co는 이자비용을 다른 소득에 대응시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USD 10의 세전비용과 USD 6.50의 세후비용을 취득한다. 종합하면, A Co와 B Co는 거래에서 총 USD 5의 세전이익과 USD 6.25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B Co에서 A Co로의 이자비용 이전의 결과, 기업그룹은 이제 마이너스 유효세율의 대상이 된다(즉, 기업그룹의 세후이익이 세전이익을 초과함).

#### 국내투자

국내투자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A Co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거주자이고, B Co는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거주자이다.

B Co는 제3자인 은행으로부터 10%의 이자율로 USD 100를 차입하였다. B Co는 이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여 추가적인 USD 15의 이윤을 창출하였다. USD 10의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B Co는 USD 5의 세전이익과 USD 3.25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A Co는 B Co에 대한 기존 지분 USD 50을 같은 금액과 10%의 이율(제3자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 것과 같은 이율)에 의한 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B Co는 0만큼 세전 및 세후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A Co는 B Co에 대한 대출로 이자소득을 취득하고, USD 5의 세전이익과 USD 4.25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기업그룹은 B Co에서 A Co로 소득을 이전함에 따라 유효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A Co는 B Co에 대한 기존 지분 USD 100을 같은 금액의 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B Co는 이자비용을 다른 소득에 대응시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거래의 결과 B Co는 이제 USD 5의 세전손실과 USD 3.25의 세후손실을 취득한다. A Co는 B Co로부터 이자소득을 받고, USD 10의 세전이익과 USD 8.50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종합하면, A Co와 B Co는 USD 5의 세전이익과 USD 5.25의 세후이익을 취득한다. B Co에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게 하고, A Co로 소득을 이전하게 하는 결과, 기업집단은 이제 음의 유효세율을 부담한다.

4. 국제적 부채이전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세율의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더 많은 기업집단의 부채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학술연구에서 입증되었다(Møen et al., 2011; Huizinga, Laeven and Nicodeme, 2008; Mintz and Weichenrieder, 2005; Desai, Foley and Hines, 2004). 부채이전은 선진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쟁점이 되는데, 학술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부채이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Fuest, Hebous and Riedel, 2011). 학자들은 과소자본은 다국적 기업집단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Taylor and Richardson, 2013), 외국인 소유 사업체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내국인 소유 사업체보다 더 많은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gger et al., 2010). 제3자 부채에 대한 차입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집단 내부대출이 활용되면서(Buettner et al., 2012), 기업집단 내부 부채와 제3자 부채를 통하여 추가적인 부채가 제공된다(Møen et al., 2011). 연구자들은 또한 과소자본규정의 효용성을 살펴 보았고, 그러한 규정이 자회사의 총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Blouin et al., 2014; Buettner et al., 2012). 과소자본규정이 기업집단 내부부채에 대한 이자공제에만 적용되는 경우 이 규정은 기업집단 내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와 동일한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부채를 증가시키게 된다(Buettner et al., 2012).

5. 이자한도규정의 투자에 대한 영향 역시 학술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그 주제는 이론적 모델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접근되었다. 이론적 관점에서 투자에 관한 이자한도규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봤을 때, 연구자들은 그 규정이 실효자본비용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Ruf and Schindler,

2012).<sup>4</sup> 이론적 접근방법은 특정국가는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대한 과소자본규정을 적용한다는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Haufer and Runkel, 2012).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제한적인 실증분석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투자에 대한 독일의 이자한도규정의 효과를 분석하는 두 연구들은 모두 과소자본규정과의 관계(Weichenrieder and Windischbauer, 2008)나 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에 기초한 이자공제한도규정(interest barrier rules)(Buslei and Simmler, 2012) 어느 쪽에서도 투자 공제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sup>5</sup> 이러한 실증적인 뒷받침의 부족은 다국적 기업집단들이 입법의 미비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자본구조를 수정하여 이자한도규정의 적용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uf and Schindler, 2012). 이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이자한도규정의 실질적인 영향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각 국가들은 제3자 이자와 기업집단 내부이자와 관련한 BEPS 문제에 대하여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의 규정들을 도입하여 왔다. 이들 규정에는 기업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자공제 수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한을 가하는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과 구체적인 조세회피 위험을 다루는 특정규정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이 사용된 경우, 다른 규정들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상황 모두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반면,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투자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들에 의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의 주된 유형은 본 개요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거나, 각 국가들의 일방적인 조치는 이 문제의 핵심 이슈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이는 자금의 대체가능성 및 금융상품의 유연성이 기업이 규정의 효과를 적용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유사한 효익을 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들이 근본적인 핵심이슈들에 대한 대응 없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거나 존재하는 규정들을 개정하고, 복잡성의 단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 국가만이 이자비용 공제에 제한을 하는 방법은 그 국가의 국제사업에 대한 매력도와 국내 기업집단의 국제적인 경쟁능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7. 이에 따라 이자를 이용한 BEPS를 둘러싼 우려를 다룸에 있어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활용한 일관된 접근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업집단들로 하여금 다음에 따른 금융구조를 채택하게 한다: (i) 기업의 순이자비용은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순이자비용에 연관되어 있고 (ii)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의 배분은 소득창출활동과 연관되어야 한다. 기업집단들도 국가 간의 일관된 접근방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원칙에 기초한 유사한 규정들은 예상가능 한 규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본구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요청되는 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차원의 시스템과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지고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관된 접근은 BEPS의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왜곡을 없애고 의도하지 않은 이중과세의 위험을 줄이며, 기업집단 간의 공정성 및 공평함을 향상시킨다.

### BEPS Action Plan과 이자비용

8. 2012년 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조화롭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룰 action plan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2013년 7월 OECD는 BEPS Action Plan(OECD, 2013)을 내놓았고, 이는 15개의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이자를 활용한 BEPS의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동일한 지출금에 대해 이중공제를 발생시키는 혼성상품이나 혼성실체를 사용한 거래나 지급인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나 수취인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지급금은 Action 2(혼성불일치 거래의 효과에 대한 무효화)에 따라 개발된 모범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Action 3(CFC rules의 강화)에 따른 작업으로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의 설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저세율 과세관할에 있는 피지배회사에서의 이자소득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Action 4(이자공제와 다른 금융지출을 통한 세원잠식 제한)는 과세되는 경제활동과 함께 이자공제를 조정함으로써 이자와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활용한 BEPS를 다루는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모범사례를 위한 권고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Action 4는 본 문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2017년까지 완성되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다루어질 관계사 간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지침과도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들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범 접근방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Actions 8-10 하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무형자산; 위험과 자본; 그리고 기타 위험성이 높은 거래)의 Chapter I의 수정사항은 제공된 자금에 대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무위험수익인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을 제한하고 기업집단 내부의 금융지급금액을 평가하는 시점에 그룹시너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9. Action 4는 과도한 이자공제나 과세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소득창출에 사용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특수관계자 및 기업집단 내부의 대여를 활용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모범 접근방식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기업집단들이 일관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기업집단이 다른 법적 형식 하의 대출을 통하여 규정의 적용이 회피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이자와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BEPS는 제3자와의 부채 (예를 들어, 한 기업이나 국가가 기업집단의 전체 제3자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와 기업집단 내부 간의 부채 (예를 들어, 기업집단이 과세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 간의 이자비용을 이용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급이 국외나 국내의 대여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의 BEPS는 구조화된 거래에 따라 제3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결과로, 또는 해외의 대여자에 대한 지급과 일치하도록 국내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이자를 지급한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BEPS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모범 접근방식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 이자와 관련된 BEPS를 저지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방법

10.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다른 유형의 규정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중요한 작업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규정들이 실무상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납세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각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자공제 제한을 위하여 현재 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각 국가들의 그룹이나 기업의 부채수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의 분석과 연구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11. 각 국가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6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고, 일부 국가들은 한 유형의 규정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1) 정상가격 판단기준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이자나 부채의 수준을 그 기업이 제3자와 전적으로 거래할 경우 존재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한다.
- 2)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세로, 이 방법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 3) 지급의 성격이나 대상과 관계없이 기업의 이자비용 중 특정한 비율을 부인하는 규정.



- 4) 부채/자본, 이자/소득비율 또는 이자/총자산과 같은 고정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이나 부채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
- 5)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자비용이나 부채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
- 6) 구체적인 거래에의 이자비용이 부인되는 특정조세회피 규정.

12. 정상가격 판단기준(Arm's length test)은 개별기업의 환경, 즉 기업이 제3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부채의 총액과 차입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특정한 상업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세무행정도 허용되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적용하기에 집중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거래들이 시작된 이후 각 기업은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사전동의를 통하여 감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정상가격 판단기준의 장점은 기업체들이 그들의 환경에 따라 다른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러한 접근방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몇몇 국가들은 다른 규정들에 대한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음에도 BEPS의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자한도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기업의 이자소득과 비용). 특히, 각 국가들은 기업집단들이 그 기업집단에 실제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부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본과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기업집단 부채를 구조화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정상가격 판단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특히 BEPS Action Plan(OECD, 2013)에서의 관심사로 특히 언급되는 세원잠식 위험인 비과세 자산이나 소득의 흐름에서 투자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된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13. 원천세는 주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할당하지만, 국가 간 지불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따라 BEPS 거래로 인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원천세는 비교적 적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기계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천세가 법인세와 같은 세율로 적용되지 않는 한 BEPS의 기회는 남아 있을 것이다. 사실 기업집단이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거나 (다수의 기업들의 원천징수 된 조세에 대한 공제요구와 같은)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구조화된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몇몇 사례에서 원천세는 BEPS를 유도할 수 있다. 원천세가 적용되는 경우 순소득에

대한 세금총액에만 공제를 하게 되면 효율성은 감소하겠지만 지급받는 국가가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가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수입이자 총액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할 경우 BEPS에 개입되지 않는 기업집단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과세소득이 이자비용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실제로 원천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자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감소한다 (0의 세율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이자 및 로열티에 관한 지침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이루어진 이자지급에 대하여 원천세를 적용하는 것은 EU 회원국에게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몇몇 국가들이 현재 이자지급에 대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에는 광범위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금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 상황에서 원천세가 본 보고서의 주제인 BEPS 위험을 완벽하게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여전히 원천세를 모범사례와 더불어 계속 적용하려 할 것이다.

14. 사실상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이자 중 일정비율을 부인하는 규정은 어떠한 최소한도 를 초과하는 모든 부채금융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도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동일한 비율로 부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자와 관련한 BEPS를 목표로 하는 방법보다 자본보다 부채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15.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들은 독자적으로 BEPS Action Plan(OECD, 2013) Action 4의 모든 목적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에 위 규정들은 다른 이자제한규정과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과 관련한 BEPS를 막는 모범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그 규정을 지원하거나 다른 조세정책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모범사례(best practice approach)와 함께 그 국가의 조세제도 내에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BEPS를 저지함에 있어서 모범사례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 한, 각 국가는 모범 접근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도 기업의 이자비용 총액의 일부 비율을 부인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정상가격규정(arm's length test)을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16. 본 보고서의 모범 접근방식은 4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이 일부나 모두 결합되는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자공제에 대한 일반적 제한규정은 기업이 고정재무비율(fixed financial ratio)에 근거한 순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비율이 더 높은 경우 그 기업이 기업집단의 재무비율까지 더 많은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과 결합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국가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차별 없이 다국적 및 국내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들은 일반 규정의 효력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회피전략을 다루기 위한 특정규정(targeted rules)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하고, 특정규정(targeted rules)은 또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위험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가들을 위하여 이자와 관련한 BEP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규정하여야 하고, 그들의 사업과 상업적인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부채금융에서 유발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7. 고정비율에 따라 이자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비교적 적용하기가 쉽고 이자비용의 수준을 기업의 경제활동의 정도와도 연관시킨다. 이 규정들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방식이 언제나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인 것은 아니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부채자본요건(debt/equity test)에 기초한 과소자본규정을 통하여 이자의 공제 가능성을 기업의 자본수준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규정의 주된 장점은 기업체의 부채와 자본의 수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세무행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한 기업집단이 자금조달을 계획하는 시점에 그 기업집단에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중요한 단점이 있다. 기업의 부채 총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율에 관하여 유의미할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또한, 자본요건(equity test)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자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자본을 허용하며, 기업집단이 특정 기업체의 자본수준을 증가시켜 요건충족 결과를 조작시키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 이에 관련한 그림은 별첨 D의 Example 1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국가들은 고정비율 부채자본요건(fixed ratio debt/equity tests)이 비록 이 요건이 이자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에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BEPS를 방지하는 모범접근방법의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18. 최근 각 국가들은 점점 더 BEPS를 방지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기업의 이자/소득 비율에 기초한 고정비율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요건에서 사용된 소득의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할부상환액 고려 전의 소득(EBITDA)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EBITDA의 세무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국적 기업집단들은 실제 제3자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총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도 남아있다. 제6장에서 논의된 자료는 양의 EBITDA를 가진 대부분의 상장 다국적 기업집단은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10%에 미달하는 순제3자이자비용/EBITDA 비율을 보인다.

19. 기업의 이자비용 또는 부채의 정도를 그 기업집단의 이자비용이나 부채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규정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국가들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집단비율요건은 최근 일반적으로 부채자본비율(debt/equity ratio)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업의 자산총계는 그 활동수준의 간접적인 척도에 불구하고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 특정규정(targeted rules)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을 보충할 수 있고, 모범 접근방법의 구성요소가 된다. 많은 국가들은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구체적인 BEPS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BEPS의 기회가 대두됨에 따라, 특정규정(targeted rules)은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규정들의 도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야기하며 행정비용과 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 특정규정이 구체적인 위험들을 다루기 위하여 일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일반이자한도규정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은 추가적인 특정규정(targeted rules)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규정(targeted rules)은 본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법 쟁점

21. 본 연구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EU법 요구사항들은, 특히 권고된 접근방법이 EU 조약체결의 자유, 지침 및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고려되었다. 유럽연합 외의 국가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일관된 국제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28개 EU 회원국에 의하여 완전하게 시행될 수 없는 어떠한 접근방법도 효과적으로 국제적 BEPS 이슈를 막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EU 조약체결의 자유, 지침, 국가보조금 규정 및 이들을 다루기 위한 가능한 접근방법들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은 본 보고서의 별첨 A에 제시되어 있다.

## 주석

1. 국내 기업집단은 한 국가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집단이다.
2. 이 예제의 처음 부분은 Graetz(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3. 이 예제의 모든 화폐금액은 미국달러(USD)로 표시된다. 이는 단지 실례일 뿐이고, 실제 사례나특정한 국가에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4. Weichenrieder and Windischbauer (2008)는 독일의 1994년 과소자본세제 도입과 2001년 규제강화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Buslei and Simmler (2012)는 2008년 독일 이자제한규정의 도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5. 다른 회원국의 특수관계자 간에 지급된 이자와 사용료에 관한 일반과세제도와 관련된 2003년 6월 3일 Council Directive 2003/49/EC

## 참고 서적

- Blouin, J. et al. (2014),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Multinational Firm Capital Structure", IMF Working Paper, No. 14/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Buettner, T. et al. (2012), "The impact of thin-capitalization rules on the capital structure of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6, Elsevier, Amsterdam, pp. 930-938.
- Buslei, H. and M. Simmler (2012), "The impact of introducing an interest barrier Evidence from the German corporation tax reform 2008", DIW Discussion Papers, No. 1215, DIW Berlin.
- Desai, M.A., C.F. Foley and J.R. Hines (2004), "A Multinational Perspective on Capital Structure Choice and Internal Capital Markets", *The Journal of Finance*, Vol. 59,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pp. 2451-2487.
- Egger, P. et al. (2010), "Corporate taxation, debt financing and foreign-plant ownership",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4, Elsevier, Amsterdam, pp. 96-107.
- Fuest, C., S. Hebous and N. Riedel (2011), "International debt shifting and multinational firms in developing economies", *Economic Letters*, Vol. 113, Elsevier, Amsterdam, pp. 135-138.

Graetz, M.J. (2008), "A Multilateral Solution for the Income Tax Treatment of Interest Expens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 62, IBFD, pp. 486-493.

Haufler, A. and M. Runkel (2012), "Firms' financial choices and thin capitalization rules under corporate tax competi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6, Elsevier, Amsterdam, pp. 1087-1103.

Huizinga, H., L. Laeven and G. Nicodeme (2008), "Capital structure and international debt shift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8, Elsevier, Amsterdam, pp. 80-118.

Mintz, J. and A.J. Weichenrieder (2005), "Taxation and the Financial Structure of German Outbound FDI", CESifo Working Paper, No. 1612.

Møen, J. et al. (2011), "International Debt Shifting: Do Multinationals Shift Internal or External Debt?", University of Konstanz,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2011-40.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Ruf, M. and D. Schindler (2012), "Debt Shifting and Thin Capitalization Rules - German Experi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Bergen, NHH Discussion Paper RRR, No. 0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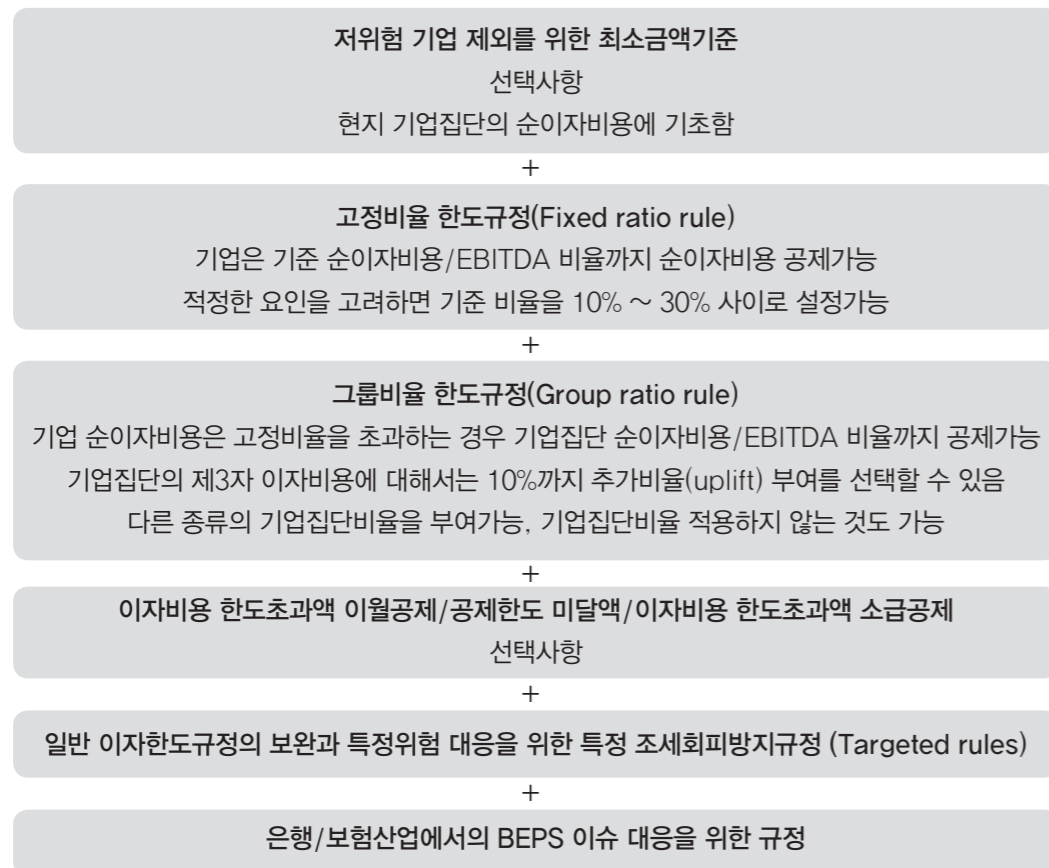
Taylor, G. and G. Richardson (2013), "The determinants of thinly capitalized tax avoidance structures: Evidence from Australian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Vol. 22, Elsevier, Amsterdam, pp. 12-25.

Weichenrieder, A.J. and H. Windischbauer (2008), "Thin-capitalization rules and company responses - Experience from German legislation", CESifo Working Paper, No. 2456.

## 제1장 모범 접근방식을 위한 권고

22. Action 4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목표는 이자와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이용한 BEPS를 다루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범 접근방식을 구축함에 있어서 초점은 국가들이 직면한 위험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 적용이나 효과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전략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필요에 맞춰져 있었다. 동시에 이것은 기업집단과 과세관청이 적용하기에 상당히 쉬운 접근방법에 대한 필요와 균형을 맞춘다. 모범 접근방식의 간단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접근방법의 세부적인 개별요소는 다음 장들에서 다룬다.

Figure 1. 1. 모범 접근방식에 대한 개관



23. 모범 접근방식은 기업집단의 순이자공제를 세무가액에 기초한 이자, 조세,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공제 전의 이익으로 측정된 이익(이하, EBITDA라 한다) 중 고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에 기초한다. 이는 적용이 쉬운 규정이며 기업집단의 이자공제가 그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증한다. 또한 이러한 공제는 기업집단의 과세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조세회피에 대응하게 한다.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BITDA는 사용된 소득에 대하여 권고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사례는 국가가 이자 및 조세 공제 전 이익(이하 EBIT라 한다)에 기초한 규정을 도입하는 데에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어떠한 국가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가치에 기초한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6장은 어떠한 국가가 10%에서 30%의 구간 안에서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위한 기준비율을 설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24.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은 BEPS에 대항하는 일정한 수준의 보호수단을 제공하지만, 이는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집단은 다른 부채수준을 필요로 하고 동일한 분야에서도 일부 기업집단은 비조세적인 이유로 높은 수준의 부채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딘 도구이다. 기준고정비율이 BEPS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정해진다면, 이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진 기업집단들에게 이중과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환경에서 더 많은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과 결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은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는 별도로 구분된 조항이나 고정비율요건과 그룹비율요건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규정을 통합하여 도입될 수도 있다.

25. 제7장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데, 이 규정은, 기업에 기준고정비율보다 순제3자이자비용/EBITDA 비율이 더 높을 경우, 기업에 기준고정비율을 초과하는 순제3자이자비용/EBITDA 비율까지 이자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룹비율을 계산할 때에 국가는 기업집단 순제3자이자비용(즉, 제3자에 대한 이자비용에서 제3자에 대한 이자소득을 공제한 비용)의 1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 하에서 더 높은 기준고정비율과 그룹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의 이자비용/EBITDA 비율에 해당하는 순이자비용만이 부인된다. 이 규정은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보완할

것이고, 이자비용에 관련된 BEPS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자산기준비율과 같은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기업집단의 재무비율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에서 기준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국가들은 그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모범 접근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BEPS를 다루기에 충분히 낮은 기준비율을 사용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시행하여야 한다.

26.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의 범위에서 낮은 위험을 야기하는 기업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순이자비용의 화폐가치에 기초한 최소허용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한도에 미치지 않는 기업들은 이자비용을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어떠한 국가에서 기업집단이 하나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한도는 당해 국가의 모든 기업을 포함한 전체 현지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의 총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개별기업 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는 이 한도를 하회하는 여러 기업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자한도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집단을 막는 반파편화규정(anti-fragmentation rule)을 고려하여야 한다.

27. EBITDA를 이자공제와 연관시키는 규정은 기업의 이자비용과 이익이 각각 다른 기간에 발생한 경우에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는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매년 변한다는 소득변동성 때문이거나, 기업이 이후 연도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의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각 국가는 기업에게 미래 기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인된 이자비용이나 공제되지 않은 한도미달액을 이월하거나 전기에 부인된 이자비용의 환급을 허용할 것이다. 각 국가들에게 이러한 이월이나 환급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도록 제안되었다.

28.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과 관련한 BEPS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 이자한도규정들은 일반 이자한도규정들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남아 있는 구체적인 BEPS를 다루는 특정규정(targeted rules)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29. 은행과 보험 분야의 특징은 본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이 이러한 분야의 이자와 관련한 BEPS를 다루는 데에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0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위험을 다루기 위한 특정규정(targeted rules)를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가 2016년에 완성시키기 위해 수행될 것이다.

30. 최소한 본 보고서에서의 모범 접근방식은 다국적 기업집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된다. 각 국가들은 또한 국내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체 및/또는 그룹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 기업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모범 접근방식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여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 각 국가들은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별첨 A는 EU 구성국들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EU법 쟁점에 대해 요약하였다.

31. 본 보고서에서의 모범 접근방식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과 관련한 BEP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BEPS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다른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의 규정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범 접근방식은 어떠한 국가가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다루기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파악한 추가적인 일반 이자한도규정이나 특정 이자한도규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는 부채금융에 유리한 조세결과상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보다 넓은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자한도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점과,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들을 도입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모범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 이자한도규정과 결합되는지에 대한 사례는 별첨 D의 Example 2에 있다. 마지막으로 모범 접근방식을 실행할 때에 각 국가들은 전반적인 조세시스템의 구체적인 특징 외에 그들의 헌법 하의 의무 (납세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는 최소허용한도의 적용,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의 운용 및 이월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이 개별 기업체에 대한 과세와 그룹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제11장에서 다루고 있다.

32. 본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모범 접근방식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다룬다:

-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
- 누구에게 모범 접근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이자비용이나 부채에 대한 모범 접근방식의 적용
- 소득이나 자산의 가치를 활용한 경제활동의 측정
-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
-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
- 변동성 대응과 이중과세의 취급
- 특정규정(targeted rules)
- 은행과 보험 기업집단에 대한 모범 접근방식의 적용
- 모범 접근방식의 실행

## 제2장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

33. 이자비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무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다루어지지만, 각 국가는 어떤 비용이 이자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과세목적 상 공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가지는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모든 과세목적 상,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이자의 정의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니다. 공제되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는 항목에 관한 국가들 간의 차이는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고, 각 국가들은 원천세와 같은 과세 목적 상 그들의 고유한 이자의 정의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BEPS를 다루는 규정의 설계를 위한 파악하는데 있어, 그러한 규정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에 일관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려 하고, 사업활동에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국가에 걸친 이슈를 막기 위한 일관된 접근방법을 보장하려는 국가들에 이득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BEPS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한다.

34. 간단하게 말해서 이자는 돈을 빌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나 규정이 좁은 범위의 지불이라는 범주에 한정되어 집중된다면,<sup>1</sup> 다음의 3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 각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자공제 및 유사한 지불금에 관한 BEPS 위협의 다양성을 다루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
- 같은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다른 자금조달방식을 취하는 기업집단들에 대하여 다른 취급을 함에 따라 공정성이 감소될 수 있다;
- 다른 조달방식으로 차입을 재조정하는 기업집단들에 의하여 그 효과가 쉽게 회피될 수 있다.

35. 이러한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이자를 이용한 BEPS를 저지하는 규정은 모든 형태의 부채 형식에서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지급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은 기업의 자금용자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이나 가상의 원금에 고정적이거나 변동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이 규정은 또한 주선수수료(arrangement fees)와 보증수수료(guarantee fees)를 포함하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야 한다. 본 장은 규정이 다루어야 할 지불의 유형에 대한 사례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이자 및 다른 지불의 정의를 고려하여 국내법 안에서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에게 남겨져 있다.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불인지 아닌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률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6. 따라서 이자비용을 이용한 BEPS를 다루기 위한 모범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i) 모든 형태의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 (ii)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불; 및 (iii) 자금조달 관련 비용. 이들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이익참여부채의 지불금
- 전환사채와 제로쿠폰본드와 같은 상품에 내재된 이자
- 이슬람 금융상품과 같은 대체적인 금융계약 하의 금액
- 금융리스 지불금 중 금융비용 요소
- 관련 자산의 대차대조표 상 잔액에 포함된 자본화된 금융비용이나 자본화된 금융비용의 상각액
- 이전가격제도에 따른 지원금 수익(funding return)에 기초하여 평가된 금액
- 기업의 차입금과 관련된 파생상품이나 헤지계약에 따른 가상이자금액
- 자금조달과 관련 있는 차입금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 금융계약에 관한 보증수수료
- 자금차입과 관련한 주선수수료와 이와 유사한 비용

37. 자본조달과 관련된 통화위험노출을 헤지하거나 부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외환손익은 일반적으로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국가는 국내조세규정과 따라서, 그리고 통화위험노출의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또는 일부의 외환손익을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38. 본 보고서에서, 이자에 대한 언급은 문맥 상 명백히 다른 것을 요하지 않는 한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보고서가 기업집단이나 기업의 이자소득을 언급하는 경우, 이에는 본 장에서의 정의와 사례에 근거하는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취를 포함한다.

39. 모범 접근방식은 이자가 아니거나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지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위한 공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자금조달과 관련 없는 금전항목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 상품파생상품처럼 차입금과 관련 없는 파생상품이나 헤지계약에 따른 금액
- 차입금과 관련 없는 총당금 상 할인액
- 운영리스료
- 사용료
- DB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40. 하지만 어떤 지불금 (위에서 언급한 것들 포함)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발생시킨 거래의 일부분으로 사용된 경우 모범 접근방식 상 제한대상이 될 것이다.

41. 실무상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림은 별첨 D의 Example 3에 있다.

42. 국가가 특정한 비율을 기업의 자기자본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간주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간주공제액은 본 보고서의 목적상 이자 또는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및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규정들은 OECD에 의하여 별도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주석

1. 이 보고서를 통해, 지급금에는 수입이나 비용의 발생액이 포함된다.

## 제3장 누구에게 모범 접근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43. 기업집단 안에서의 거래, 기업집단 밖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그리고 제3자와 구조화된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로 BEPS는 발생한다.<sup>1</sup> 모범 접근방식은 다른 유형의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다룬다. 어떤 기업이 이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기업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다국적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국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그리고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독자적인 기업. 본 보고서에서의 모범 접근방식은 최소한 다국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기업들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각 국가들은 또한 국내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그리고/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 아닌 독자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모범 접근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sup>2</sup>

###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인 기업

44. BEPS Action Plan(OECD, 201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자의 공제가능성은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의 시나리오 모두와 관련하여 BEPS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제6장에서 언급된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은 다국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기업에 적용될 것을 권고한다.

45. 기업이 어떤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기업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라면 그 기업은 기업집단의 구성원이다.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과세관할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집단은 다국적 기업집단이다.

46.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함께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두 규정 사이에 일관된 정의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국가는 대신 다음의 상황에서 기업이 기업집단의 소속임을 결정할 수도 있다: (i) 기업이 어떠한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경우; 또는 (ii) 어느 법인이 (제7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하는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마련한 경우에 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업인 경우.

47. 어떤 기업집단이 특정한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각 기업에 개별적으로 또는 같은 국가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 (즉, 현지 기업집단)에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할 것이다.<sup>3</sup> 현지 기업집단 전체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지 기업집단의 이자비용이 한도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 불공제 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 현지 기업집단 전체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록 허용된 제한 범위 내에 현지 기업집단의 이자비용이 포함될지라도 높은 수준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 불공제 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시나리오를 방지한다.

48. 기준고정비율(benchmark fixed ratio)이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기업이 지급하는 지급액과 관련되는 BEPS에 대응할 것이다.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이 BEPS를 저지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이 규정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피전략에 대항하는 특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각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특정규정(targeted rules)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모범사례에서의 특정규정(targeted rules)의 역할은 제9장에서 논의된다.

### 국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49. 다국적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주된 BEPS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집단 (즉, 오직 하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는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국가는 더 넓게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하는 것을 택할 것이다. 이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BEPS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및 다국적 기업집단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에 편향적인 국세의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납세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과 같은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폭넓은 접근방법이다. 특히, EU의 구성국인 국가들은 그들의 국내규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EU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EU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 국내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또는 국내 기업집단 전체에 적용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은 이자와 관련한 BEPS를 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각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제9장에서 논의된 특정규정(targeted rules)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51. 국내 그룹의 기업에 대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특히 구조화된 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자나 제3자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BEPS 위험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제9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정규정을 이용하여 이러한 위험을 다루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독자적인 기업

52. 독자적인 기업체는 그룹의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다. 독자적인 기업이 그룹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독자적인 기업이 야기하는 BEPS 위험의 성격이나 수준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독자적인 기업은 소규모 기업이고, 개인에 의하여 직접 소유되며, 공통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작은 규모와 특수관계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자와 관련한 BEPS 위험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한 투자자의 통제 밑에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독자적인 기업이 신탁이나 파트너십이 관계된 복잡한 소유구조에 따라 소유된 대규모 기업일 수 있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 BEPS 위험 수준은 기업집단 구조로 인한 위험과 유사할 수 있다. 양쪽의 시나리오에서 이자와 관련한 BEPS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은 특수관계자와 제3자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53. 독자적인 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BEPS를 다루기 위하여 국가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독자적인 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독자적인 기업에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을 적용하거나 다른 규정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독자적인 기업은 특정한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제9장에서 논의된 특정규정(targeted rules)을 따라야 한다. EU 회원국은 그들이 EU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내규정을 만들 때 EU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국내 규정을 만드는 시점에, BEPS와 관련 없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려에 넣어야 한다.

### 최소허용한계

54.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모범 접근방식의 주요 정책적 목표가 이자를 활용한 BEPS를 다루기 위한 것인 반면, 어떤 기업은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에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는 매우 낮은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모범 접근방식이 다른 기업들의 협력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중요한 BEPS 위험을 야기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수의 감소는 또한 규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과세관청이 큰 위험을 야기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55. 따라서 국가들은 낮은 위험을 야기시키는 기업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최소허용한계를 도입한다. 이러한 한계는 모든 현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순이자비용의 총계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권고된다. 개별 기업들의 순이자에 기초한 한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개별적으로는 한계를 하회하는 여러 기업들을 설립하여 이자한도규정을 회피하는 기업집단을 막기 위하여 반파편화규정(anti-fragmentation rules)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56. 순이자비용에 기초하는 최소허용한계는 적용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며, 높은 수준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들이 일반 이자한도규정을 그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국가는 관련된 조세 또는 법적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이자율의 환경을 포함하는 많은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허용한계의 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될 것이다.

## 주석

1. “특수관계자”와 “구조화된 거래”라는 용어는 제9장에서 정의된다.
2. 한 국가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좀더 폭넓게, 예를 들어, 국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이자제한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별첨 A는 EU회원국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포함된, EU법 이슈에 대해 요약하였다.

## 참고 문헌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 제4장

### 이자비용이나 부채 수준에 기초한 모범 접근방식의 적용

57. BEPS의 핵심 원인은 가치창출을 하는 근본적인 활동으로부터 인위적으로 과세소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집단의 능력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의 모범 접근방식의 목적 중 하나는 기업의 이자공제금액을 기업의 과세가 가능한 경제활동의 수준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 기업의 이자비용이나 부채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모범 접근방식의 적용

58.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은 기업이 세무상 공제하는 이자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기업이 이자공제와 관련한 부채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모범 권고사항에 포함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이자를 활용한 BEPS는 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공제가능 이자의 수준에 따라 발생된다. 이는 기업의 이자공제 수준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다루어진다.
- 대출 시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의 부채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은 반드시 BEPS에 대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은 허용된 부채수준에서의 최대한 이자를 명확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정상가격 판단기준 (arm's length test)의 적용이나 기업의 실제 이자비용의 배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규정의 운영에 한 단계가 추가되어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 모범 접근방식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과 관련한 BEPS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에 있어서는 기업이 지급에 관련된 부채를 별도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과 과세관청이 조세경감을 주장하는 이자의 지급 (및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 기업의 부채수준은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특정 날짜의 부채총계나 일정 기간의 평균은 기업의 실제 상태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한편, 기업의 이자비

용 수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차입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정기간 이 경과함에 따른 기업의 실제 상태를 더 적절하게 보여준다.

- 기업의 부채수준에 기초한 규정은 상업적인 이유에서 같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두 기업들이 다른 이자율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즉, 차입금 통화와 신용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을 제한하는 규정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의 실제 이자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업의 부채수준은 기업경영의 통제 하에 있고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비용의 수준은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이자비용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자율이 오르고 미래에 이자가 부인될 위험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장기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9.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핵심적 정책목표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과 관련한 BEPS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의 모범사례는 기업이 세무상 공제가 가능 한 이자비용 수준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룰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과 같은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이 큰 신용위험을 나타내고 제3자에 대해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해 세금상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도입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모범 접근방식과 더불어 정상가격 판단기준(arm's length test)을 계속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는 기업이 주장하는 이자비용금액이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계산된 것임을 보장할 수도 있으나, 이 금액은 본 보고서의 모범 접근방식에 따라 한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 기업의 총이자비용 또는 순이자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모범 접근방식의 적용

60. 또 다른 핵심질문은 일반적인 이자제한규정이 이자소득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차입으로 인하여 초래된 이자비용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총이자비용) 또는 수령한 이자소득을 상계하고 난 후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순이자비용)이다.

61. 총이자규정은 간단하다는 장점과 기업집단이 조세회피전략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총이자규정은 각 기업이 그들의 총이자소득은 과

세대상이 되면서 총이자비용의 일부는 부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62. 순이자규정은 이자제한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기업의 이자소득을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일부 불공제되는 총이자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 부채와 기업집단 내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의 일반적인 이자제한규정은 이자소득을 상계한 이후 기업이 제3자, 특수관계자 및 기업집단 내부에 지불한 순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용된다.<sup>1</sup> 규정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과도한 제3자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BEPS를 다룬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기업의 순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63. 그러나 기업이 비교적 낮은 이자비용을 가진다는 사실이 BEPS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순이자소득을 가지는 기업은 이 소득을 조세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하여 이자비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순이자비용의 수준을 줄이면서 다른 과세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BEPS라고 확인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총이자비용을 부인하는 특정한 조항으로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을 보완할 것이 권고된다. 이는 제9장에서 논의된다.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은 또한 그들의 사업 모델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이자소득의 수취인인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는 특히 제10장에서 논의된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 발생한다.

### 특정 공익 프로젝트 배제를 위한 선택사항

64. 본 보고서의 모범 접근방식은 기업이 조세목적 상 공제할 수 있는 순이자비용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에 있다.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은 제3자, 특수관계자,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에 지불된 모든 이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는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의 범위를 넘지 않는 특정한 제3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비용의 배제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제외사항들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65. 몇몇 국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익자산은 높은 수준의 부채로 자금이 조달된 큰 금액의 자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산의 성격 및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금융거래는 BEPS 위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66. 공공부문이라는 특정한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는 모범 접근방식 하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산출할 때, 특정 자산과 관련된 제3자 대출에 대한 특정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BEPS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업 (운영자)는 자산을 적어도 10년간 지속되는 장기적으로 제공(또는 업그레드), 운영 그리고/또는 유지하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러한 자산이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처분되지 않을 것이다.
- 공공부문의 기관이나 공익단체 (양도인)<sup>2</sup>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자에게 계약상 또는 다른 형태의 의무를 운영자에게 부과할 것.<sup>3</sup> 이러한 공급은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다른 상업적인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더하여 구체적인 통제나 규제 프레임워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상환불능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얻거나 빚진 대여금에 대해 운영자가 지급하는 이자, 따라서 대여자는 특정 프로젝트의 자산과 수입증가에 대해서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에 대한 상환청구와 관련된 거래, 다른 기업집단 회사로부터의 보증, 또는 프로젝트 자산을 초과하여 상환청구를 하기 위한 것은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자에 대한 대출은, 추가적인 투자가 그들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한, 취득되거나 한번 구성된 시점의 자산가치나 추정된 가치를 초과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리고 부수적인 대출(은행 보증금과 같은)을 조건으로는 어떠한 자금의 융통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운영자, 이자비용, 프로젝트 자산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동일한 국가에 있으며, 그 국가에서 소득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sup>4</sup> 프로젝트 자산이 고정사업장에 속해 있는 경우, 배제조항은 배제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인 세율로 과세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 운영자의 유사한 프로젝트나 운영자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유사한 프로젝트는 프로

젝트의 완성도를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제3자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67. 배제조항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배제조항이 공익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제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배제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 배제조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구조화 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리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배제조항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입법의 영역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출간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과세관할에서 배제조항으로부터의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들에 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위한 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OECD Report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OECD, 2015)의 제5장의 프레임워크는 그러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에 관하여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배제조항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아래와 관련한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운영을 모니터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납세자에게 이러한 배제조항의 활용을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8. 이러한 배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배제조항을 적용하는 국가는 프로젝트 소득, 자산 및 관련된 이자비용이 그 국가의 다른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위하여 더 많이 공제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이 조항으로부터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경우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의 운영을 조정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그리고/또는 프로젝트 자산)은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에서 소득 또는 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 한도에서 제외된 이자비용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할 때에 그룹의 순제3자이자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9. 이러한 배제조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 기업집단의 순이자 공제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에 이용될 것이라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룹비율 한도규정(group ratio rule)을 적용할 때, 국가는 다른 국가의 배제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3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로젝트 소득 및 자산은 기업집단의 소득이나 자산가치를 측정할

때에 제외된다. 각 국가들은 배제조항이 국제적 협약에 포함된 정보교환 규정을 활용하여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는 또한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절(paragraph)에서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70. 이러한 배제조항의 설정과 운영은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처리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에 대한 초기 검토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BEPS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하여 어떻게 배제조항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이 검토에 따라 배제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것이다.

71. EU법 쟁점은 별첨 A에서 논의된다.

## 주석

1.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는 제9장에서 정의된다.
2. 공익단체는 일반 대중, 지역사회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지분소유자에게 재무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일차적인 목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받는다. 국가가 사용하는 공익단체의 정의는 법이나 관련 회계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인 자산을 말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국내규정을 설계함에 있어 EU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OECD (2015),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Action 5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190-en>.

## 제5장 수익 또는 자산가치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 측정

72.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를 기준으로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제한한다. 다국적 기업집단의 활동 수준과 가치 창출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과 자산가치가 고려되었다.

### 수익을 이용한 경제적 활동 측정

73. 이전 장에서 강조하였듯이, BEPS 프로젝트의 목적은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으로부터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수익과 과세소득 간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익을 이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은 이자비용공제를 과세소득을 발생시키고 가치창출을 가져오는 활동과 대응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 아울러 이 방식은 적용되는 수익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업의 이자지급 이행능력을 나타내는 유용한 기준이 되며, 동시에 기업의 자금차입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74. 수익에 근거한 방식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이 기업들의 전략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 수준이 수익과 연계되는 경우, 특정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순이자비용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익을 국가 밖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사업구조조정(restructuring) 계획은 해당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순이자비용 금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수익의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수익의 조작을 통해 공제대상 이자비용 수준이 증가될 가능성은 낮다.

75. BEPS Action Plan(OECD, 2013)은 이자비용을 이용하여 과세제외 소득 또는 이연과세 소득의 창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BEPS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수익에 근거한 방식이 가지는 세 번째 장점은 수익의 정의에서 세제상 유리한 혜택을 받는 소득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많은 국가에서 (최소보유 요건 등에 따라) 면세되거나 경감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이러한 소득에 해당할 것이다.

76. 수익에 근거하여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이 가지는 주요한 단점은 기업의 수

익이 비교적 변동적이며 기업집단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익에 근거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해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자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공제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부채비용(cost of debt)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이 몇 년 동안의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거나 손금부인 이자비용 또는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제8장에서 논의한다.

77. 수익이 변동적이라 함은 기업의 수익이 마이너스(손실)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에 근거한 방식에 따르면, 손실발생기업은 순이자비용을 당기에 공제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는 손실발생기업의 이자비용이 부인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용되는 수익의 정의와 해당 정의가 세무정보와 회계정보 중 어떠한 정보에 근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아울러 손실발생기업은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이월규정 등을 통해 이자공제의 혜택을 유지하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기점에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8. 수익의 기준으로는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와 EBIT(이자와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가 적용될 수 있다.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는 지점수익 등의 비과세소득 및 배당소득은 수익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본 보고서의 주제가 되는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해 세금이 감면되는 과세대상 지점수익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sup> EBITDA는 현재 수익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EBITDA에서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주요 비현금성 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의 이자지급 이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아울러 EBITDA는 채권자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자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수익 측정기준이다. 한편 EBITDA를 이용한 방식은 고정자산투자 수준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EBITDA가 설비투자액과 같은 자본화비용의 상각(write down)은 반영하지 않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는 반영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어떠한 산업에서도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한 EBIT 대비 총이자 평균비율은 EBITDA 대비 총이자 평균비율보다 대략 40% 높으나, 산업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자산가치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 측정

79. 자산가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의 주요한 장점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점에 있다(재평가 및 상각(write-downs)이 수행되는 경우 및 회계규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은 제외). 이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제한도가 도출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집단의 확신을 증가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자산가치 방식은 수익 방식과는 달리 손실이 발생한 기업 또한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80.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자산에 근거한 방식은 기업집단의 가치창출을 유발하는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은 이자보다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토지 및 빌딩,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나, (비과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지분 등의)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가치를 이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분류된 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일관적이며 수용 가능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토지 및 빌딩, 유형고정자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의 시장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며 기업집단에게 과도한 이행부담을 부과할 것이다. 한편 감가상각된 역사적 원가에 대한 가치평가는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따라 비일관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 기간, 그리고 재평가 및 상각 시점 등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한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은 기업집단 내 가치평가액이 가장 높은 자산일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특히 해당 자산이 기업집단 내부적으로 창출된 경우에 그러하다. 이는 많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자산가치에 근거하여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해당 기업집단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무형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배분되지 않고 유보이익에 포함되는 수익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양한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은 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방식이 특히 상이하며, 이는 특히 기업집단이 금액을 총액과 순액 중 어떠한 기준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의 총자산가치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회계기준은 이를 경영진의 재량에 맡긴다. 이러한 이슈들은 자산가치에 근거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기준 고정비율은 각각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및 방침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는 자산가치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집단이 일관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산의 인식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제안되는 방식

81. 상기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과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준은 수익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에 근거한 방식과 자산에 근거한 방식 간 차이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보다는 크지 않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모범 접근방식에 반영된다.

82.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EBITDA를 기준으로 수익을 측정할 것이 권고된다. 단, 국가는 EBIT를 기준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의 기타 요소들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범 접근방식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가 EBIT에 근거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EBIT 대비 순이자비용 비율은 제6장에서 제시되는 기준 순이자비용/EBITDA 비율과 동등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국가가 제6장에 제시된 요소들을 토대로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의 적정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준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순이자비용/EBITDA 비율과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한 EBIT 및 EBITDA 평균수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83. 어떠한 국가의 경제가 감가상각 기간이 긴 유형자산에 의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자본(highly capitalized) 기업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익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된다. 단 이 경우, 자산가치는 그 대안으로서 이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가가 자산가치에 근거한 고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정의 기타 요소들은 모범 접근방식과 부합하여야 한다. 일례로,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 및 해당 국가와 그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순이자비용 수준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에 가치가 반영된 자산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유발한 주요 자산 범주를 포함하여야 하나, 참여면제제도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등의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자산가치는 회계 또는 세무수치에 근거할 수 있으나, 이는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 순이자/자산 비율은 제6장에서 제시되는 기준 순이자비용/EBITDA 비율과 동등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국가가 제6장에 제시된 요소들을 토대로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의 적정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준 순이자비용/자산 비율이 순이자비용/EBITDA 비율과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범위에 포함된 기업집단의 수 및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총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84. 국가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 모두를 수익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두 규정에 대해 EBITDA 또는 EBIT를 적용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제7장에서 논의되듯이 국가는 수익에 근거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자산가치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때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이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기업의 관련 재무비율(자산자본비율 등)이 기업집단의 동 비율과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주석

1. 지점의 수익이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에 의한 혜택을 적용 받는 경우, 기업의 EBITDA 또는 EBIT는 해당 지점의 EBITDA 또는 EBIT만큼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지점의 수익이 과세되는 경우, 기업의 EBITDA 또는 EBIT는 지점의 수익에 대해 발생한 세액 중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액에 비례하여 지점의 EBITDA 또는 EBIT만큼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일례로 기업이 지점의 수익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의 EBITDA 또는 EBIT는 지점의 EBITDA 또는 EBIT의 25%만큼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 제6장 고정비율 한도규정(fixed ratio rule)

###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목적

85.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EBITDA의 일정비율까지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의 일부가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함을 전제로 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다국적 기업집단 및 국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과 단독기업(standalone entity)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고정비율(benchmark fixed ratio)은 각국의 정부가 결정하여 기업 또는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실제 차입금(actual leverage)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3자, 특수관계자<sup>1</sup>, 기업집단 내 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이러한 고정비율에 따른 한도까지 공제될 수 있으나, 기준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손금 부인된다.

86.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이 적용하고 세무행정기관이 집행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기 다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집단들이 각기 다른 차입수준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산업의 기업집단들 또한 비조세적 원인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자금조달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집단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집행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특히 산업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업집단이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제4장에 논의된 일부 공공부문 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통해 일부 기업들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모든 산업의 기업집단 (제10장에서 논의되는 금융 및 보험업계에 속한 기업집단은 제외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규정의 적용이 논의됨)에게 동일한 기준 고정비율에 근거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87. 그러나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집단들은 경제지대(economic rent)로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높은 EBITDA를 기록하고 본 보고서에서 설명되는 일반적 규정에 따라 비교적 높은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지대로부터 이익을 얻는 산업에 속한 기업집단들에게는 보다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거나, 경제지대의 효과를 제거하여 EBITDA를 계산할 수 있다.

###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88.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미리 정해진 기준비율을 기업 또는 현지 기업집단의 수익에 적용하여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을 계산한다.<sup>2</sup>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공제 부인되는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먼저 적절한 EBITDA 측정치를 계산한 후, 기업의 EBITDA에 법정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업의 실제 이자비용과 비교한다. EBITDA는 고정비율 한도규정 적용국가의 세법에 따른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세무상 수치를 사용하여 EBITDA를 계산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규정의 적용과 검토가 상당히 간단해진다. 둘째,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의 이자비용이 손금 부인됨에 따라 그 기업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위험이 감소한다. 셋째, 이자비용 공제수준을 과세대상 수익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과세소득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절차 1: 수익 측정치 계산

89. EBITDA는 과세소득에 (1) 순이자비용 및 제2장에서 정의된 이자비용에 상응하는 지급금 및 (2)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세무상 수치를 가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비과세 배당소득 또는 해외수익 등의 비과세소득은 EBITD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비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하는 이유는 제4장에 논의된 outbound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 절차 2: 수익에 대해 법정 기준비율을 적용

90. 다음으로는 계산된 EBITDA 수치에 법정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무목적상 공제될 수 있는 최대 이자비용을 구한다.

#### 절차 3: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과 실제 이자비용을 비교

91. 마지막으로 기업이 세무목적상 공제할 수 있는 최대 이자비용을 기업의 실제 이자비용과 비교한다.

92.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 부인된다. 별첨 D의 예시 4에서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방식, 그리고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현지 기업집단에게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한다.

### 기준 고정비율 설정

93. 효과적인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각국이 BEPS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이자를 통한 BEPS에 중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타 특정규정의 수립 여부가 각국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투자유인을 위한 각국의 경쟁력은 세율, 세원의 범위, 이자공제규정을 비롯한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범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이슈로 인해 국가들이 보다 많은 이자비용이 공제되도록 기준 고정비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BEPS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 기준 고정비율의 범위(corridor)

94.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국가간 통합함으로써 국가들이 BEPS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들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정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이 권고된다.

95. 적정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이행되어야 할 주요 목표는 아래를 충족하는 기준 고정비율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제3자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순이자비용은 회계상 EBITDA에 의거하여 기업집단 내에 분배되었다고 가정).
- 기업집단이 제3자 순이자비용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내부이자비용 수준을 제한함.

96. BIAC과 PwC<sup>3</sup>가 OECD에게 제공한 재무데이터는 기준 고정비율이 각기 다른 경우일 때, EBITDA가 플러스인 상장 다국적 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외부 순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집단의 비율이 이론상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은 EBITDA에 의거하여 기업집단 내에 분배되었다고 가정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준 고정비율의 퍼센트와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므로,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집단은 분석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아래의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3년<sup>4</sup> 사이의 평균수치를 토대로 한다.

- 기준 고정비율이 10%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62%는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기준 고정비율이 20%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78%는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기준 고정비율이 30%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87%는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기준 고정비율이 40%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91%는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기준 고정비율이 50%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93%는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97. 기준 고정비율이 30%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보다 많은 기업집단이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속도가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수준이 되면 상당수의 기업집단들은 자신의 제3자 순이자비용보다 많은 순이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기업집단 내부차입 수준을 증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의 문단에 언급된 재무데이터에 따르면, EBITDA가 플러스인 상장 다국적 기업집단 중 대략 50%의 기업집단이 5% 이하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준 고정비율이 30%일 경우에는, 내부차입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기업집단이 자신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의 여섯 배까지 이자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기준 고정비율이 그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자신의 제3자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집단이 해당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받는 위험을 제한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국가들은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 비율에 근거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0-30%의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할 것이 권고된다. 제11장에 설명되듯이, 이 범위는 모범 접근방식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늦어도 2020년 말까지 완료된 이후 수정될 수 있다.

98. 기준 고정비율이 모범 범위 내에서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EBITDA가 플러스인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자신의 제3자 이자비용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는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기준 고정비율보다 높은 기업들이 BEPS를 야기할 위험이 낮다면 그들이 보다 많은 순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모범 접근방식의 기타 요소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기준 고정비율보다 높은 기업이 기업집단의 동 비율(단, 기업집단의 비율이 기업의 비율보다 높을 경우)을 한도로 보다 많은 순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순이자비용이 낮은 기업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 기준 고정비율의 설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

99. 국가들은 10%에서 30%의 범위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할 것이 권고된다. 단, 국가들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며, 각국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함께 운용하지 않고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운용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또는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3) Action 4에서 논의되는 BEPS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기타 특정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4)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자율이 높은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5) 헌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 원인 (EU법에 따른 이행규정 등)으로 인해, 형태는 다르나 법률상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기업들에 대해 이들의 위험 수준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6) 국가는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0. 이러한 요소들을 하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함께 운용하지 않고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운용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1.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운용하는 국가에서,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관련 재무비율까지 보다 많은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국가는 기준 고정비율이 차입수준이 높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중점을 둬으로써, 기준 고정비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배제하고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적용하는 국가는 기준 고정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다.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또는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2. 공제한도 미달액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공제액에서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제8장에서 논의되었듯이,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증가시키거나 EBITDA를 감소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BEPS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장되지 않아야 하므로,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는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8장에서 논의된 규제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이 요소의 비중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또는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Action 4에서 논의되는 BEPS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기타 특정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3. Action 4는 기준 이상의 이자비용을 공제받거나 과세제외 소득 또는 이연과세 소득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특수관계기업 및 기업집단 내 기업에게 지급한 이자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 포함)을 이용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권고되는 최선의 방식은 이 장에서 논의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포함하나, 이자비용 공제제한을 위한 그 외의 특정규정 또한 일부 위험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례로, 과세제외 소득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된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 부인하는 특정규정이 시행될 수 있다. Action 4에서 논의되는 BEPS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특정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요소는 Action 4에서 논의되는 이자를 이용한 BEPS 위험에 대한 대처수준에 따라 적용 기준 고정비율의 수준을 결정한다. Action 4에서 논의되는 BEPS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기타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일수록 낮은 기준 고정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자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4.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국가의 이자율 수준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인식할 것이다. 이는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요소에 따르면 이자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경우에 보다 높은 고정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이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기준 고정비율의 설정 시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이자율이 낮은 국가는 보다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자율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중앙은행 이자율, 장기 정부채권 이자율, 그리고 신용등급이 좋은 (예를 들면 A등급 이상)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평균이자율 등의 여러 이자율을 고려할 것이다. 어떠한 이자율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여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달라질 것이다. 현재 제안되는 바에 따르면, 이자율이 5% 이상인 장기

정부채권은 이자율이 높다고 간주된다.

*헌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 원인(EU법에 따른 이행규정 등)으로 인해, 형태는 다르나 법률상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기업들에 대해 이들의 위험 수준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5. 제3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자비용을 이용한 BEPS와 관련된 주요 위험은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범 접근방식에 따라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헌법상 또는 기타 법률상 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집단 내 기업 및 이자를 이용한 BEPS 위험이 낮은 단독기업을 비롯한 법률상 유사기업들에 대해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BEPS 위험이 낮은 기업을 비롯한 법률상 유사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적정범위 내에서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위험이 낮은 기업들 또한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이용한 BEPS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낮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국가는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6.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그 외의 기업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일례로, 대규모 기업집단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집중적으로 차입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대해 더욱 뛰어난 협상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집단의 이자비용을 비롯한 재무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수준 높은 재무기능을 운영할 것이다. 이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첫째, Action 4에 대한 민간의견수렴 과정에서 OECD에게 제공된 재무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그 외의 기업집단의 비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기준 고정비율이 30%일 경우,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이상이고 EBITDA가 플러스인 상장 다국적 기업집단의 약 95%가 제3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모든 규모의 기업집단은 약 85%가 제3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규정의 공평한 적용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여, 그 외의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둘째, 대규모 기업집단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집중적으로 차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이 활동하는 국가들의 이자율 차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국가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의 이자율이 다른 국가의 이자율보다 높고 낮은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상기에 논의된 4번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107. 국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의는 기업이 속한 현지 기업집단뿐만이 아닌 그 기업이 속한 전세계 기업집단의 규모에 기반하여야 한다. 상기에 언급된 데이터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가총액에 기반하여 정의하였으나,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이 기준은 권고되지 않는다. 시가총액에 기반한 정의는 비상장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며, 상장 기업집단의 경우, 시가총액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 수준 이외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업집단의 연결매출액 또는 연결자산에 기반하여 정의할 것이 권고된다. 기업집단의 연결매출액 또는 연결자산에 대한 정보는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참조하거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기업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위해 제공된 자료(*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및 *Country-by-Country Reporting*(OECD, 2015))는 위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자료에만 근거하여 보다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통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시적 조항은 기업집단에게 자본구조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

#### 그 외의 고려요소들

108.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들은 상기에 설명된 요소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BEPS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제적 또는 사업상 방침으로 인해 발생한 순이자비용 또는 부채가 높을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BEPS와 관련 없는 제3자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는 위 범위 내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국가는 국내 기업집단의 외부차입이나 그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전세계적 차입에 대한 로컬데이터에 의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위 범위 내에서 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데이터는 회계수치보다는 세무수치에 근거할 수 있다.
- 이자를 이용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접근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위 범위 내에서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9. 그러나 국가는 본 보고서와 부합하지 않고, 경쟁력 이슈를 야기하거나 그 국가에 존재하는 이자를 이용한 BEPS 위험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순이자비용 또는 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국가는 관대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에 의해 보다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요소들을 적용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 설정

110. 국가는 이 장에 설명된 요소들과 그 외의 관련 요소들을 적용하여 권고되는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할 것이 권고된다. 국가는 각 요소의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이 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가는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보다 낮게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11. 국가가 권고되는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위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별첨 D의 예시 5에서 설명한다. 국가가 이 장에서 설명된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다른 방식 또한 적용될 수 있다.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112. 이자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현행 이자율은 장기적인 평균이자율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 고정비율은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이자율 수준과는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채량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발표에 따르면 법인납세자들의 부채발행량은 이자율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y et al., 2008).

113. 이러한 이유로 국가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준 고정비율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나, 그들은 이자율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신용등급은 기업채권의 신용등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orensztein, Cowan and Valenzuela, 2007). 즉, 국가의 신용등급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 고정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국가들은 납세자들에게 안정적인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율의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14. 아울러, 기준 고정비율을 조정하기로 선택한 국가는 비율의 인상과 인하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국가가 EBITDA에 15%의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이자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상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 고정비율을 15%에서 20%로 인상시키는 동시에, 이자율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기준 고정비율이 자동적으로 15%로 인하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주석

1.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제9장에서 설명한다.
2. 제11장은 국가가 현지 기업집단에게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국의 조세제도 구조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요약한다.
3. 2014년 12월 18일, OECD는 Public Discussion Draft on Action 4를 발표하였다. (Public Discussion Draft - BEPS Action 4: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www.oecd.org/ctp/aggressive/discussion-draft-action-4-interest-deductions.pdf](http://www.oecd.org/ctp/aggressive/discussion-draft-action-4-interest-deductions.pdf)> 참고).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으로, BIAC는 상장기업들의 EBITDA 대비 순이자 비율에 대한 PricewaterhouseCoopers(PwC)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재무데이터를 제출하였다. ('Comments received on Public Discussion Draft - BEPS Action 4: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Part 1' page 179 <[www.oecd.org/ctp/aggressive/public-comments-action-4-interest-deductions-other-financial-payments-part1.pdf](http://www.oecd.org/ctp/aggressive/public-comments-action-4-interest-deductions-other-financial-payments-part1.pdf)> 참고). 민간 의견수렴 과정 이후, PwC는 별첨 B에 포함된 최신 수치를 제출하였다.
4. 별첨 B의 표 B.3 참조

## 참고 문헌

Barry, C.B. et al. (2008), "Corporate debt issuance and the historical level of interest rates", *Financial Management*, Vol. 37,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pp. 413-430.

Borensztein, E., K. Cowan and P. Valenzuela (2007), "Sovereign Ceilings "Lite"? The Impact of Sovereign Ratings on Corporate Rating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Working Paper, No. 07/7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OECD (201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 제7장 그룹비율 한도규정

###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

115.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르면, 기업 또는 현지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은 EBITDA의 일정비율까지 공제된다.<sup>1</sup> 그러나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기업집단의 차입수준이 다르며, 분야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업집단의 차입수준이 다른 기업집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적용한다면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기준 고정비율보다 높은 기업집단은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차입수준이 높은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가들은 제6장에서 설명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차입수준이 높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전세계적 기업집단의 재무비율에 근거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에서 허용되는 금액보다 높은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기준 고정비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통해 BEPS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통해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116.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별도의 추가적인 조항으로 도입되거나,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포함한 전체규정의 일부로서 도입될 수 있다. 일례로, 순이자/EBITDA 비율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기업이 기준 고정비율과 기업집단의 비율 중 높은 비율까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별도로 이행할지 혹은 단일규정의 일부로서 이행할지 여부는 국가가 다양한 요소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다르다. 예를 들면, 세무수치에 근거하여 계산된 EBITDA와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조항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 요소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두 규정으로 구성된 단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117. 본 장에서는 기준 고정비율보다 기업집단의 순외부이자/EBITDA 비율이 높은 경우,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기업집단의 순외부이자/EBITDA 비율까지 공제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기업집단의 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기업집단의 비율까지

이자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고정비율과 기업집단의 비율 양 비율을 모두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부인된다.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의거한 규정은 BEPS 방지에는 효과적인 한편, 일부 기업집단은 각 기업의 순이자비용과 EBITDA를 조정함에 있어 법률적이거나 실무적인 제한을 받는다. 제3자 순이자비용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거나(하기의 제3자 순이자비용 계산에서 논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조항(제8장에서 논의)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제한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까지 공제하는 방식을 별첨 D의 예시 6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의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한 국가는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이용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러한 규정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보다 기술적인 부분은 2016년에 착수되고 완료될 것이다.

### 각기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거나,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118. 현재 많은 국가들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의 자산비율을 이용하여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핀란드와 독일에서 적용하는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에 따르면 (별첨 C에서 설명), 기업이 자사의 자기자본/총자산 비율이 기업집단의 동 비율과 동일하거나 초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이용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차입수준이 기업집단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이 장에서 설명하는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방식은 기준 고정비율과 기업집단의 비율 양 비율을 모두 초과하는 순이자에 한해 손금을 부인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많은 기업집단에게 보다 엄격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단,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은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손실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순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보다 관대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된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방식과는 다른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집단의 관련 재무비율(자기자본/총자산 비율 등)에 근거한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 접근방식으로 인정된다.

119. 국가들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간 세무상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거나, 헌법적인 이유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인해, 기업집단 전체의 차입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다국적 기업집단과 국내 기업집단의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차별 없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120. 국가가 본 장에서 설명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지, 상이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지, 혹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정 범위 이내의 기준 고정비율과 제6장에 설명된 요소들을 근거로 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기업집단의 재무정보 입수

121.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이 속한 전세계적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 EBITDA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업은 현지 과세당국에 의해 조사될 수 있는 기업집단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가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현지 과세당국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범 접근방식은 규정이 기업집단과 과세당국이 적용하기에 비교적 간편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집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기준 고정비율까지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122. 연결재무제표는 전세계적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원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집단의 정보는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발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기업집단 재무데이터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는 독립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국가는 감사 받지 않은 연결재무제표가 어떠한 형태의 신뢰성 있는 승인을 받거나 과세당국의 검토를 받는다면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

123. 국가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 또는 다국적 상장 기업집단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원칙(국제회계기준(IFRS), 일본 GAAP, 미국 GAAP 등)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인정할 것이 권고된다. 비상장 기업집단이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단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기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허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어떠한 회계원칙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결정을 따른다(지역 및 주요 외국인투자 원천을 고려)

124. 대부분의 상장 기업집단과 비상장 기업집단의 경우, 감사 받은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웹사이트를 비롯한 공개적인 정보원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집단 내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과세당국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국제적인 협약의 정보교환 조항을 이용하여, 그들이 제공받은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제공한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지 여부를 모회사 소재지국의 과세당국과 확인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연결수치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 기업집단의 정의

125. 다국적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가장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는 연결재무제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에 관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의는 재무회계 측면에서 연결된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은 모회사와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완전히 통합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한다.

126.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지분구조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현지 재무보고 또는 규제를 위해) 다양한 수준으로 작성하는 기업집단은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에 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할 것이다. 기업집단은 개인 또는 법인 이외의 단체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에는 포함되었으나 항목별로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단체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환언하자면, 지분법(equity accounting),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 또는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포함된 단체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가 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는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이 자본가치 상승 및 투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에 해당하여 투자금액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제를 받은 단체는 지분구조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단체와 그 단체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한) 별개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방식을 별첨 D의 예시 7에서 설명한다.

127. 제9장에서 설명되듯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집단의 비율이 기업집단 외부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이자로 인해 과장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특정규정(targeted rule)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sup>2</sup> 특정규정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에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이 규정에 따른 조정을 요구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공동 통제하에 있는 단체를 비롯한 특정 특수관계자들을 기업집단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도 있다. 현재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기자본/총자산 비율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모든 이자비용을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하기의 제3자 순이자비용 계산에서 설명).

128. 모범 접근방식을 각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 기업집단 전체에게 적용하는 국가는 재무보고 목적상의 기업집단(넓은 의미에서, 50%의 통제권 판단기준에 근거)과 세무목적상의 기업집단(일반적으로 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통제권에 근거) 간 차이로 인한 이슈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목적을 위한 현지 기업집단은 그 외의 세무 목적을 위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 경우, 연결납세(tax consolidation), 손실이전(loss surrender), 수익기여(profit contribution) 규정과의 상호작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제11장에서 논의한다.

###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

129.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공제 허용되는 순 이자비용 금액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1.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결정  

$$\text{제3자 순이자비용} / \text{기업집단의 EBITDA} = \text{기업집단의 비율}$$
2. 기업의 EBITDA에 기업집단의 비율을 적용  

$$\text{기업집단의 비율} \times \text{기업의 EBITDA} = \text{순이자비용 공제한도}$$

### 단계 1: 기업집단의 EBITDA 대비 제3자 순이자비용 비율 결정

130.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세계적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기업집단이 적용하고 과세당국이 조사하기에 최대한 간단한 규정이 되기 위해, 해당 비율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상 정보에 의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제3자 순이자비용 계산

131. 제2장에 설명되었듯, 모범규정은 이자와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을 이용한 BEPS에 대처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소득과 비용에 대한 처리방식은 회계기준마다 다르나, 대부분의 회계기준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무회계 수치에 근거한 제3자 순이자비용을 적용할 것이 권고된다.

132.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은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 갈수록 정확성 수준이 증가하나, 동시에 복잡성 수준도 증가한다.

#### 방식 1: 조정되지 않은 재무회계 수치 이용

133. 제3자 순이자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식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상 소득과 비용 수치를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자소득 및 비용, 금융소득 및 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명시될 것이다. 이 방식은 적용이 간단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BEPS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그러나, 조정되지 않은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한도가 너무 높거나(BEPS를 야기) 낮을 수 있는(이중과세 야기)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이 방식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은 적용되는 회계기준, 그리고 이자소득 및 비용을 기업집단 손익계산서상의 다른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일부 회계기준은 특정 소득과 비용 항목이 영업이익, 금융소득 및 비용, 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되는 것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정되지 않은 수치를 적용한다면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금융소득과 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방식 2: 특정 금액에 의해 조정된 재무회계 수치 이용

134. 기업집단의 조정되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상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 대신, 조정을 통해 특정 지급금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첫 번째 방식보다는 다소 복잡하나, 회계기준 간의 차이에 대응하고 제2장에 설명된 지급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국가는 기업이 제3자 순이자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자에 경제적으로 상응하지 않는 지급금 제거.** 이는 (1) 배당소득, (2) 금융상품의 처분손익,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4) 실제 지급된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상이자액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금액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자본화 이자비용 추가.** 자본화 이자비용은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며 기업집단의 금융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자본화 이자비용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자본화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은 당해 이자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수행되거나,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친 감가상각 기간 동안 수행될 수 있다.
- **상당한 소득 또는 비용 범주에 인식된 이자소득 또는 비용 추가.** 이는 총수익에 포함된 이자소득 또는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재무정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은 이러한 금액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금액으로 인해 제3자 순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135. 이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각 조정금액을 독립된 회계사에 의해 감사 받을 것을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조정금액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방식 3: 이자 및 제2장에 명시된 기타 지급금의 재무보고 평가액 이용

136. 가장 정확하나 동시에 가장 복잡한 이 방식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자 및 제2장에 명시된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의 정의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근거로 평가하도록 한다.

137.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제3자 순이자비용을 도출한다. 단, 이 방식은 기업집단의 금융소득 및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과 제2장에 제시된 정의에 포함되는 항목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수치를 도출한다. 반면,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러한 제3자 순이자비용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이 방식은 국가가 기업집단의 장부와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되어야 한다.

### 제안되는 방식

138. 제3자 순이자비용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치를 토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조정되지 않은 수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현재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 방식에 따르면 제3자 순이자비용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수치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각 방식의 실행가능성, 각기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발췌하는 방식, 재무보고 수치를 조정하는 경우 제3자 순이자비용에 포함되고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

139. 세 가지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이 적용되든, 국가는 제3자 순이자비용의 최대 10% 상향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집단이 실제 지급한 제3자 순이자비용 전액이 반영되지 않는 위험이 감소한다. 또한, EBITDA와 순이자비용을 정확히 연계시키기 위한 기업집단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 상향조정의 적용방법을 별첨 D의 예시 6c에서 설명한다.

140. 상기의 기업집단의 정의에서 논의되었듯,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이 기업집단 외부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이자로 인해 과장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는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기업집단 내 각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국가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3자 순이자비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혹, 국가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3자 순이자비용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당해 지급비용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효과를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제9장에서 논의된 특정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 기업집단 EBITDA의 계산

141. EBTIDA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다(금융업과 보험업은 예외로 하며, 이를 제10장에서 논의함). EBITDA는 기업집단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목적상, 이는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142. 기업집단의 EBITDA는 법인세, 제3자 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손상차손비용 포함) 차감 전 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3자 순이자비용이 자본화 이자비용(또는 자본화 이자비용의 감가상각액)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경우에는 자본화대상 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배당소득, 제3자 순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금융소득 및 비용, 기업구조조정 및 합병으로 인한 일회성 항목, 지분법회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는 포함되나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기업집단의 일부는 아닌 관계기업 및 합작투자기업에 의한 수익배분 등의 항목들이 기업집단의 EBITDA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수취배당이 규정 적용국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EBITDA에 배당소득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의 EBITDA의 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이행될 것이다.<sup>3</sup>

### 단계 2: 기업의 EBITDA에 기업집단의 비율을 적용

143.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과 EBITDA가 결정된 이후에는, 기업집단의 EBITDA 대비 제3자 순이자비용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비율은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의 EBITDA에 적용되어,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신청될 수 있는 이자비용 공제액의 한도를 결정한다. 모범 접근방식에 의하면, 국가는 기업의 EBITDA를 세무적 또는 회계적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모범

접근방식에 따라 기업의 세무상 EBITDA와 회계상 EBITDA를 결정하는 방식을 하기에서 설명한다.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D의 예시 8에서 설명한다.

### 기업의 세무상 EBITDA 결정

144. 기업의 세무상 EBITDA는 과세대상 이익에 세무상 순 이자비용, 감가상각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세무상 금액은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의 세무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에 의한 혜택을 적용 받는 지점수익 및 배당소득 등의 비과세소득은 세무상 EBITD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주제인 BEPS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점수익과 배당소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공제혜택을 받는 정도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기업의 세무상 EBITDA에 적용되어, 세무상 원칙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해당 한도는 세무 목적상 기업의 순이자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어, 공제될 수 있는 이자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145. 세무상 원칙을 적용하여 EBITDA를 결정하는 방식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기업의 수익을 결정함에 있어 권고되는 방식과 일관된다. 또한 이 방식은 기업집단이 적용하고 과세당국이 조사하기에 간단하며, BEPS 방지를 도모함에 있어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액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 수준과 연계시킨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기업의 과세소득이 회계상 소득보다 높을 경우,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인상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행한다면, 그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은 수준은 감소될 것이다. 국가가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현지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집단 전체에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세무상 EBITDA는 개별 기업들의 세무상 EBTDA의 합계를 구함으로써 간단히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들의 과세기간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 기업의 회계상 EBITDA 결정

146. 기업의 회계상 EBITDA는 기업집단의 EBITDA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단,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및 지점수익 등의 비과세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비과세소득을 수취하여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인상시키는 측면의 BEPS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47.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상 EBITDA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규정과 동일한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수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는 현재 local GAAP(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GAAP)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은 많은 기업집단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실무적 대안으로, 대부분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EBITDA 요소들은 주된 회계기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인식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local GAAP에 따라 계산된 기업의 EBITDA를 허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local GAAP에 따라 계산된 기업의 EBITDA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local GAAP이 IFRS 및 기타 주요 회계기준과 부합하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148. 기업의 회계상 EBITDA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따른 손익을 제거하는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것 권고된다. 이에 따르면, 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EBITDA의 합계가 해당 기업집단의 연결 EBITDA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기업집단 내 한 기업이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는 반면, 해당 재화가 기업집단 외부로 아직 판매되지 않아 재화를 매입한 기업의 매출원가에 해당 매입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기업집단 내부적으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기업의 경제적 활동 수준이 해당 기업의 EBITDA에 반영되도록 한다. 국가가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현지 기업집단 전체에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현지 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회계상 EBITDA의 합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서로 상쇄되지 않은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제거되어야 한다.

149.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기업의 회계상 EBITDA에 적용되어, 회계상 원칙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해당 한도는 세무 목적상 기업의 순이자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어, 공제될 수 있는 이자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혹은, 회계상 원칙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기업의 회계상 순이자비용과 세무상 순이자비용 간 차액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별첨 D의 예시 8c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 손실발생기업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응

150. 일반적으로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집단의 EBITDA 대비 제3자 순이자비용 비율에 따른 한도까지 이자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업집단 내에 손실발생기업이 존재함으로써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제한되어야 한다.

151.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업집단의 EBITDA가 플러스이나, 기업집단에 손실발생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기업집단에 손실발생기업이 있다면, 기업집단의 EBITDA는 감소하고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증가한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 내 이익발생기업들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증가하며, 그 한도는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실제 순이자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면 해당 한도를 이용하여 미래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별첨 D의 예시 9a에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위험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의 이자비용한도에 대해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제3자 순이자비용으로 상환을 책정하는 일반원칙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상환을 책정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자공제액이 기업집단의 EBITDA가 손실에 의해 인화되지 않을 경우에 허용되는 이자공제액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이자비용 공제금액의 총액이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개별기업이 BEPS에 이용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이자비용한도를 배분 받는 상황을 방지한다. 상환기준의 운용방식을 별첨 D의 예시 9b에서 설명한다.

152.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업집단의 연결기준 EBITDA가 마이너스이나, 기업집단에 이익발생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므로, 어떠한 특정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이익발생기업은 기업집단의 실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모범 접근방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EBITDA가 플러스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실제 순이자비용과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중 낮은 금액이 이자비용한도로 설정될 수 있다. 별첨 D의 예시 9c에서 나타나듯이, 이 경우 기업은 기업집단의 실제 순이자비용을 한도로 실제 순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황적으로 기업집단의 비율의 계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기업의 이자비용공제를 기업집단의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153. 손실발생기업을 기업집단 EBITDA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기업에 대해 과도한 이자비용한도가 허용되는 위험을 제거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집단 내 손실발생기업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업이 정보를 과세당국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과세당국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업집단 내 손실발생기업들이 모두 파악되고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방법의 실무적 이행방식을 별첨 D의 예시 9d와 9e에서 설명한다.

154. 손실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이 이행될 것이다. 손실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슈들은 해당 규정이 수익에 근거한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실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항은 규정될 필요가 없다.

## 주석

1. 제11장은 각국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현지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함에 있어, 자국의 조세제도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들을 설명한다.
2. 특수관계자(related party)의 정의를 제9장에서 제시한다.
3. 재무보고 목적상, 관계기업(associates)이라 함은 기업집단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통제되기에는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기업집단이 기업의 의결권의 20%에서 50%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제8장 변동성과 이중과세에 대응

155. 이자비용 공제금액을 기업의 EBITDA 수준과 연계시키는 접근방식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는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한다. 수익 변동성 또는 이자비용과 EBITDA의 시기상 불일치로 인해 기업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에서의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 설명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집단의 EBITDA 대비 제3자 순이자비용 비율(기준 고정비율보다 높을 경우)을 한도로 순이자비용을 공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이용한 그룹비율 한도규정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별첨 C에 설명된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은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이라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몇 년 동안의 평균 EBITDA를 적용하거나, 손금부인 이자비용과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평균 EBITDA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 측정

156.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단일연도 동안의 경제적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안보다, 평균 수치를 사용하는 방안을 통해 단기적인 변동성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해당 비율은 당기와 이전 2개연도의 EBITDA의 평균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연도의 낮은 수익이 다른 연도의 높은 수익과 상쇄됨으로써 단일연도에 발생한 EBITDA가 미치는 영향은 3년으로 분산될 수 있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이 방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기업집단의 EBITDA에 대한 평균 수치와 개별 기업의 EBITDA에 대한 평균수치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수치의 계산 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논의될 필요가 있는 그 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치를 사용하면 기업의 손실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손실이 1-2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157. 평균 수치를 사용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으나, 평균 수치의 계산 기간을 벗어나는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또한 이 방안은, 기업이 예를 들면 2년 이후에 EBITDA를 창출할 프로젝트 또는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158. 종합적으로, 평균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변동성에 대처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모범 접근방식 내에서 이 방안을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차익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수치를 사용하는 방안은 현지 기업집단 내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것이 권고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에서 3년 동안의 평균 수치가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별첨 D의 예시 10에서 설명한다.

### 손금부인 이자비용과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159. 이자 지급이 BEPS를 야기하는 특정 거래와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기준 고정비율과 기업집단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순이자비용을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자비용이 미래기간에 시정될 시기상 불일치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일례로, 기업이 미래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프로젝트 또는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EBITDA가 시장환경의 변화 등 기업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변동함에 따라,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순이자비용 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순이자비용 금액이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의 EBITDA의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자비용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기업집단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자비용의 영구적 부인은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다.

160.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한도를 설정한다.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순이자비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이자비용은 부인되거나(순이자비용이 공제 허용되는 최대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순이자비용이 공제 허용되는 최대 금액보다 낮을 경우)할 것이다. 손금부인 이자비용과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자비용과 EBITDA가 각기 다른 기간에 발생하여 이자비용이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분명한 이익이 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는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익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161. 모범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가는 손금부인 이자비용 또는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다음을 허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의 이월공제
-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 및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 손금 부인된 이자비용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162.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이월되거나 소급될 수 있는 손금부인 이자비용은 공제될 수 있는 순이자비용 중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이다. 특정규정에 따라 부인되는 이자비용은 특정 BEPS 위험을 야기하는 거래 또는 약정과 관련되므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163. 국가가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에서 허용되는 금액에서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에만 제한될 것이다. 혹은, 국가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에서 허용되는 순이자비용에 근거하여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수익의 변동성이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며, 기업집단이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원칙과 부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면 순이자비용 전액을 이미 공제한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이월공제액을 축적할 수 있다.

164. 손금부인 이자비용과 공제한도 미달액을 이월 또는 소급하여 다른 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BEPS 위험을 야기한다. 이는 특히 장기적이거나 기간 한도가 없는 이월공제가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인상하거나 미래기간의 EBITDA를 인하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법인세자산을 상당수준 발생시킬 수 있는 공제한도 미달액의 경우에 그러하며, 순이자비용을 인상하거나 미래기간의 EBITDA를 인하하는 것은 BEPS 방지 목적상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장기적이거나 한도가 없는 이월공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허용되는 이자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미래기간에 공제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자비용을 최대 한도까지 인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은 즉각적인 현금화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인된 이자비용의 소급공제 또는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와 관련된 위험만큼은 심

각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165. 따라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기간 및/또는 금액 측면에서 한도를 부과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BEPS 위협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와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한도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손금부인 이자비용 또는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 기간, 또는 손금부인 이자비용의 소급공제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
- 이월공제금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간 10%씩).
-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 금액의 상한이 설정될 수 있다.
- 단일 연도에 허용되는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 연도로부터 이월된 공제한도 미달액과 상쇄될 수 있는 당기 순이자비용을 50% 이하로 규정)
- 특정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관행에 따라 이월공제 금액이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소유권이 변동하였거나 경제적 활동의 성격이 변동한 경우)

166.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는 부인된 이자비용에 대해 두 규정에서 단일의 이월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이자비용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부인되는지 혹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부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적용과 집행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일례로, 기업집단은 이월공제대상을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각각의 이월공제대상에서 이월된 이자비용의 공제방식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이월공제대상이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인된 이자비용이 동일 규정에 따른 이자공제한도와 상쇄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167. 이자한도규정을 각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지 기업집단 전체에게 적용하는 국가는 이러한 방식이 이월규정 및 소급규정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기업이 기업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의 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9장 특정규정(targeted rules)

### 특정규정의 목적

168. 현재 많은 국가들은 BEPS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 가지 장점은 이미 자본수준이 적절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고정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이 개별기업들의 차입수준을 기준비율에 따른 한도까지 증가시키는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특정규정은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BEPS에 관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들이 우려하는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도 단점들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단점은 특정규정은 어느 정도까지 항상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국가들이 특정 BEPS 위협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집단들은 특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들을 허용되는 거래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특정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규정은 능동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다. 이 점은 과세당국이 규정이 적용 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업집단과의 대면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특정규정만을 사용하는 방식은 결국 상당수의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복잡성,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규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면 이를 통해 BEPS와 관련된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한편,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핵심 분야에서는 특정규정을 통해 일반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은 국가들에게 BEPS에 의한 주요 위협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위안을 주는 동시에 기업집단이 자신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69.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범 접근방식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을 권고하나, 특정규정 또한 BEPS와 관련된 일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 장에서는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의해 대응될 수 없는, 특정규정이 필요한 몇 가지 특정 위협들을 제시한다. 국가들은 기존의 특정규정 및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이 특정 위협들에 대응한다면,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국가는 고정비율 한도규정 이외에도, 고정된 부채/자기자본 비율에 기반한 과소자본세

제를 적용하여 과다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자비용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을 부인할 수 있다.

170. 거래에 대한 특정규정의 영향은 해당 거래 및 규정이 대응하고자 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규정이 거래에 따른 총 이자비용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규정이 일부 비용에 대해 적용되거나 동 거래에 따른 소득을 반영한 후의 순이자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거래로 인해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제3자 순이자비용이 증가한 경우, 규정은 특정한 손금불산입 처리 없이 단순히 해당 증가액을 무시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 일반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규정

171. 모범 접근방식은 규정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만일 적용된다면)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규정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계획에 대응하는 특정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아래의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을 도입할 것이 권고된다.

- 이자비용이 발생한 기업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순이자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자비용을 다른 형태의 공제비용으로 전환하거나, 기타 과세소득을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전환)
- 기업집단 구성원인 기업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제3자 순이자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또는 구조화된 거래에 개입된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자소득을 다른 형태로 전환).
- 기업집단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법인격이 없는 지주회사를 지배구조의 가장 상위에 두어 두 개의 기업집단을 만드는 경우. 이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예를 들면,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단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기존의 기업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72. 위와 같은 위험들은 단일 규정,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포함된 특별 조항, 또는 기타 세법규정 (예를 들면, 국가의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에 의해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만일 적용된다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 구조화된 거래의 정의를 아래에서 제시한다.

### BEPS와 관련된 기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

173.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을 통한 대부분의 BEPS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 그러나 제3장에 제시되었듯, 국가는 특정한 경우 다국적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 대해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의한 BEPS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BEPS와 관련된 여러 특정한 위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래의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 순이자소득이 발생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집단 내 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지급을 수반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 기업이 자사 또는 자사가 속한 기업집단에게 조달된 자금이 없는 ‘가공의 차입 (artificial loan)’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기업이 back-to-back 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에 따라 제3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기업이 과다하거나 과세제외 소득의 창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된 이자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저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174. 위의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규정들은 기

업이 제6장에 설명된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 ‘특수관계자’ 및 ‘구조화된 거래’의 정의

175. 상기에 열거된 여러 특정 위험들은 특수관계자 또는 구조화된 거래에 개입된 제3자와의 거래 또는 그들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가리킨다.

#### 특수관계자

176. 기업집단 구성원인 기업과 기업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 또는 기업 간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할 경우 그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상, 동일 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두 당사자 (개인 및 기업 포함)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거나, 제3자가 양 당사자 모두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경우
- 당사자들이 제9조에 따라 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으로 간주되는 경우

177. 제3자에 대한 출자를 통해 어떠한 당사자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거나, 일정 비율의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해당 당사자에 일정 비율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된다.

178. 특수관계자의 정의상,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 또는 지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당사자와 함께 행동(acting together)하는 자는 해당 의결권과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79.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두 당사자는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 또는 지배와 관련하여 함께 행동(acting together)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동일 지배그룹의 구성원일 경우
-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 또는 지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를 체결한 경우
-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 의결권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 또는 지배가 특정 당사자 또는 집단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납세자가 집합투자기구(CIV,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인 경우, 만일 투자관리자가 투자위임지침의 조건 및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을 근거로 두 개의 펀드가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함께 행동하지 않았음을 과세당국에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펀드가 보유하는 지분은 ‘함께하는 행동(acting together)’ 판단기준에 따라 합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180. 이러한 측면에서, 집합투자기구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다양한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기구의 유형은 국가들의 결정에 따른다. 일례로, 국가들은 만일 특정 유형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즉시 매매가 가능하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기구로 간주할 것이다 (즉, 주식의 매매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특정 투자자 집단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는 집합투자기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 구조화된 거래

181. 특정규정은 기업이 구조화된 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구조화된 거래란 기업, 기업,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자들이 이자 지급거래의 전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한다.

182. 구조화된 거래의 예시로는, 제3자가 기업,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다른 기업 또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 또한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back-to-back’ 거래를 들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비용은 이자 이외의 비용일 수 있다.



## 제10장

### 최선의 실무 접근방법을 은행과 보험 기업집단에 적용하기

183. 이자를 포함하는 BEPS를 다루는 최선의 모범 접근방식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은행과 보험 분야에 속한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특별한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4. 은행과 보험업에서 이자의 역할이 다른 분야에서의 역할과 다른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자신들의 주된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유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분야의 사업은 자신들의 자본구조에 제한을 두는 강력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1년에 바젤III(은행자본 건전화방안)에서 은행분야의 차입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표준 차입비율을 도입하였는데 바젤III는 과거에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피해를 준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sup>1</sup> Solvency II 지침은 EU에서의 보험회사에게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 그룹은 규제에 대상이지만, 그룹 내의 모든 실체가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규제목적으로 규칙위반에 대한 처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sup>2</sup>

185. 규제상 필요에 따라 부과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행의 차입비율은 평균적으로 다른 분야 기업집단이 영향을 받는 정도와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차입비율에 대한 세금의 영향은 은행이 자본 상으로 제한되는 경우 감소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집단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여유 있게 완충자본을 보유한다(Heckemeyer and de Mooij, 2013; Keen and de Mooij, 2012).

186. 은행과 보험 기업집단의 BEPS는 잠재적으로 여러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현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법정 완충자본(부채요소를 포함)을 소유하는 적격기업(regulated entities); 기업집단 내에서, 지점과 비적격기업(non-regulated entities)에 과도한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 규제 목적상 별도로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과 통상적인 부채를 저세율국에 있는 중간기업을 통해 이전;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제혜택을 받은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자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제가능한 이자비용을 사용;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실체 사용.

187. 은행과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수준보다 여유 있게 완충자본을 보유하고 유지해야 할 중요한 상업적인 동인(예를 들어, 신용평가와 자본비용과 관련된)이 존재한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보다 높게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집단이 변동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하지만, 일부 BEPS 기회를 야기하기도 한다.

188. 이 보고서에서 설명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여러 이유로 BEPS를 다루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분야의 기업집단에 게는 중요한 부채 조달처 이고, 따라서 많은 은행과 보험회사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순대여자이다. 이러한 점은 기업집단에서 주요 기업과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순이자비용보다는 순이자수익을 보통 얻게 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의 순이자비용을 제한하는 것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은 은행과 보험회사 내의 중요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이자수익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수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EBITDA가 이러한 분야에 속한 기업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평가하는 적합한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보험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속한 기업집단의 재무제표와 다르며, 특히 이러한 점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의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의 BEPS를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이들 분야에 속한 기업집단의 기업의 제외를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그 나라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BEPS를 다루는 특정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189. 어떠한 적용상 예외도 정부가 허가한 금융기관(treasury companies), 종속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companies) 또는 유사은행업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이 없는 경우 다른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비적격기업(non-regulated entities), 또는 적격·비적격 투자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범 접근방식이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90. 은행과 보험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 또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규제를 받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이자가 포함된 BEPS를 막기 위해서 모범 접근방식을 면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모든 분야의 속한 기업집단이 BEPS를 막기 위해서 모범 접근방식은 다른 기업에서 제기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과 보험회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 분야에서 제기된 BEPS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범 접근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작업이 2016년에 수행될 것이다. 이에는 (제조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같은) 비금융 기업집단 내에서 수행되는 은행·보험업 활동에 관한 작업을 포함한다. 특히 어떤 권고된 이자제한규정이라도 미래의 재정상 위기를 발생시키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본규제와 충돌하거나 그 규제의 효과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국가가 이 보고서에서 설명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은행과 보험회사에 속한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 이들 분야에서 제기된 BEPS 위험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특정한 모범 접근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 주석

1. 제3차 바젤협약의,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 회원들이 은행부문의 규제, 감독, 그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의한, 포괄적인 일련의 계약조치이다 ([www.bis.org/bcbs/index.htm?m=3%7C14](http://www.bis.org/bcbs/index.htm?m=3%7C14), accessed on 3 September 2015).
2. 유럽의회와 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개시와 수행에 관한 2009년 10월 25일 각료의사회(Solvency II) [2009] OJ L335/1. 의 Directive 2009/138/EC

## 참고 문헌

- Heckemeyer, J. and R. de Mooij (2013), "Taxes and Corporate Debt: Are Banks any Different?", *IMF Working Paper*, No. 13/22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Keen, M. and R. de Mooij (2012), "Debt, Taxes and Banks", *IMF Working Paper*, No. 12/4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제11장 모범 접근방식 실행

### 실행과 조정

191. 이 보고서는 이자가 포함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맞붙기 위한 최선의 실무 접근 방법을 추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어떤 나라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BEPS 위험을 다루거나 더 넓은 세무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일반적인 이자제한 규정이나 특정 이자제한 규정을 이 접근방법에 보충할 수 있다.

192. 기업집단 비율한도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된 예시적인 지침을 위해서 모범 접근방식의 특정영역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은행과 보험 분야의 기업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를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BEPS를 다루는 특별한 규정을 설계하는 작업도 수행될 것이다. 이 작업은 2016년에 완료될 것이다.

193. 이 보고서에서 설명된 모범 접근방식(기준이 되는 고정비율 한도 설정을 위한 통로와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선택적인 예외를 포함)의 설계와 내용은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에 의해서 늦어도 2020년 말까지 처음에 검토가 될 것이다. 이 검토는 최선의 실무와 기업집단의 행동에 따른 규칙을 도입한 국가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검토는 합의된 통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역시 고려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들은 국가에서 개별 실체와 국내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과 EBITDA의 수준에 대한 세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장려되고 자국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데이터도 역시 가능한 수집하는 것이 장려된다. 이 검토 이후에 최선의 실무의 요소가 개정될 것이다.

### 과도기의 규정

194. 이 보고서에서 설명한 최선의 실무 접근방법은 이자가 포함된 BEPS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실체의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중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을 도입하려는 나라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현재의 차입계약의 구조를 조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 나라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기간 제한 없이 현재 존재하는 일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과도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이러한 과도기의 규정은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주로 제한될 것으로 제안된다. 새로운 규정 발표 이후로 체결한 어떠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과도기의 규정에서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어떠한 과도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개별실체 납세와 연결납세 제도

196. 여러 나라에서 현재 다른 종류의 연결납세와 개별실체납세를 포함하는 법인과세제도를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최선의 실무 접근방법이 포함된 특별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 리포트에서 설명된 최선의 실무 접근 방법은 어떠한 제도와의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실체 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나라

197. 국가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각 개별실체에 별도로 과세를 하는 경우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각 국가에서 선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은 각 개별실체의 EBITDA에 근거하여 각각 적용될 수 있다.
- 국가는 세무상 기업집단 내에 기업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단일 실체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고정비율이 세무상 기업집단의 전체 세무 EBITDA에 적용될 것이다. 이자지불능력은 그 나라에서 개발된 규정에 따라 세무상 기업집단 내에서 배부될 것이고, 이 규정에는 기업집단이 실체 사이에 이자지불능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납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세무상 기업집단의 거래는 실체 EBITDA 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서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만, 세무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은 실체들은 계속하여 별개의 실체로 다루어질 것이고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국가는 재무보고상 기업집단 내에 실체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단일 실체로 처리할 수 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의 거래는 실체 EBITDA 에서 거래 납용 방지를 위해서 제거될 수 있다. 이 선택사항은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을 사용하는 국가에 특히 적합하고,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에 속한 실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같은 세무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실체 사이에 이자지불능력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는 이 선택사항이 (현재 존재하는 손실포기, 이익분여 혹은 유사한 규정과의 불일치와 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와 같은 다른 조항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체가 재무보고 상 기업집단에 합류하기 이전 기간으로부터 발생한 계수로 인한 이월공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업집단 납세제도를 적용한 국가들

198. 국가가 기업을 기업집단이나 연결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은 각 나라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국가는 연결납세 기업집단 내에 실체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단일 실체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고정비율이 연결납세 기업집단의 전체 세무 EBITDA에 적용될 것이다. 이자지불능력은 연결납세 기업집단을 전체로 보아 허용된 순이자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서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만, 연결납세 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은 실체들은 계속하여 별개의 실체로 다루어질 것이고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기업집단 비율 한도규정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국가는 재무보고상 기업집단 내에 실체들을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단일 실체로 처리할 수 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의 거래는 실체 EBITDA 에서 거래 납용 방지를 위해서 제거될 수 있다. 이 선택사항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사용하는 국가에 특히 적합하고, 재무보고상 기업집단에 속한 실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연결납세 기업집단과 이에 속하지 않는 실체 사이에 이자지불능력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선택사항이 정책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와 같은 다른 조항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체가 재무보고 상 기업집단에 합류하기 이전 기간으로부터 발생한 계수로 인한 이월공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Action 2에 따른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정과 모범 접근방식의 상호작용

199.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도입한 국가의 경우,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순이자비용이 전반적으로 제한되므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거래에 의한 잠재적인 BEPS 위험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 위험은 제거되지는 않는다.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 내에서, 혼성상품이나 혼성체가 이중과세나 공제/비과세의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에 기업이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거래는, 기업집단 전체에 걸쳐 높은 수준의 이자비용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집단의 순제3자이자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 보고서 상 모범 접근방식과 함께, Action 2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200.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보다 먼저 적용되어 기업의 순이자비용 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순이자비용 총액이 결정된 이후에 적용되어, 해당 비용의 전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혹은 부인되는 순이자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한다.

201. OECD 보고서인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OECD, 2014)에 따르면, 자기자본에 대해 간주이자공제(deemed interest deductions)를 허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규정은 Action 2에서 논의되지 않으나, 개별적으로 혹은 Action 4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ction 2에서 제시되었듯, 기업의 자기자본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간주공제액은 이 보고서의 목적상 이자 또는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규정은 차후 OECD에 의해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 Action 3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CFC) 규정과 모범 접근방식의 상호작용

202.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이자비용 과다공제 및 과세제의 소득

의 창출을 위한 자금조달에 사용된 이자를 통한 BEPS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 국가는 기업이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자비용을 저세율로 과세되는 CFC에게 지급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ction 3(*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s*(OECD, 2015))의 권고안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CFC)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203. 국가가 CFC 규정과 이자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할 경우, 모회사에 대해 과세되는 CFC 소득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시 계산되는 모회사의 EBITDA에 반영될 것이다. CFC 소득이 이자소득 또는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국가는 모회사의 순이자비용의 계산에 이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이자를 모회사의 EBITDA의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04.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범 접근방식은 기업집단 내 기업간 순이자비용을 분배하도록 유도하여 이자비용과 경제적 활동과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CFC 규정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기업집단이 내부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비용 수준을 감소시킴에 따라 CFC에서 창출되는 순이자소득 금액이 감소되고, 기업집단 내 순이자비용과 EBITDA의 연계성이 증가될 것이다.

### 그 외의 이자한도규정과 모범 접근방식의 상호작용

205. 이 보고서에 설명되었듯, 국가는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더불어, 제9장에서 논의된 위험 및 국가가 발견한 그 외의 위험 등, 특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정상가격 판단기준(arm's length rules), 이자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부인하는 규정, 과소자본세제를 비롯한 그 외의 일반 이자한도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206.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특정규정과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보다 먼저 적용될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이자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규정의 내용 및 대응하고자 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종 결정한다.

### 원천징수세와 모범 접근방식의 상호작용

207. 일반적으로 이자 원천징수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게 배분하기 위해 부과되나, 원천징수세는 이자를 통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해 기업집단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세는 이 보고서에 설명된 고정비율 한도규정, 그룹비율 한도규정, 특정규정의 적용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순 이자공제액을 제한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부인함에 있어, 모범 접근방식은 부인된 이자비용을 다른 목적을 위해 재분류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이자 지급금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부인된 이자를 배당금 등으로 재분류하는 국가는 이러한 처리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범 접근방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208. 기업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이자를 지급받고 해당 기업의 국가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이자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될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모범 접근방식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기업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서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OECD (2014),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agraph 45. <http://dx.doi.org/10.1787/9789264218819-en>

OECD (2015),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 별첨 A EU법 이슈

209. 이 별첨에서는 EU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범 접근방식을 이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EU법 이슈들을 간략히 요약한다.

### EU 조약의 자유(EU treaty freedom)

210. 이자제한 규정의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조약의 자유는 설립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설립의 자유는 주주가 실체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sup>1</sup> 적용되는 사례이다. 한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주가 실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자본의 투자만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용역 제공자와 수령인 모두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용역을 제공할 자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11. 이자제한 규정의 범위는 어떠한 자유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고 EU 조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작업에 참여한 국가가 논의한 많은 접근방법이 있다. 이점에 있어서, EU멤버가 EU 조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을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하여야 한다.

- EU 회원국 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을 보전할 필요성
- 조세회피를 막고 인위적인 계약을 방지할 필요성

### EU 지침서(directives)

212. EU 내에서 이자공제 제한 규정과 관련이 있는 2개의 EU지침서가 있는데, 모자법인 지침(the Parent Subsidiary Directive<sup>2</sup>)과 이자 및 로열티 지침(the 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sup>3</sup>)이다. 모자법인 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국경을 넘어가는(cross-border) 원천징수세액을 제거하고 또한 이러한 소득의 모회사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 지침은 과도한 이자가 배당금으로 재분류 되는 사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재분류된 이자는 모자법인 지침의 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13. 이자 및 로열티 지침은 EU회원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로열티의 지급은 원천에서 차감하거나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는 나라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과도한 이자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자에 대한 과세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이 지침의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EU대법원은 지침은 단지 채권자의 세무상 포지션을 다루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다<sup>4</sup>. 채무자인 실체의 수준에서 이자비용의 공제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EU 국가 보조금(State aid)

214. EU 국가 보조금 이슈는 이자 공제 가능성 규정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예외를 포함한다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있는 조약의 조항인 ‘회원국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는 어떤 행태로든지의 국가 자원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조가 회원국간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이 조약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된다.<sup>5</sup>

2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보조금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sup>6</sup> 이 지침에 따르면, 합리적이지 않은 특별한 세금 규정에 대한 예외는 국가보조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EU조약은 EU회원국에게 국가 보조금 조항에 예외를 도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의 분류가 조약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7</sup>

## 주석

1. 현재까지 유럽사업재판소는 중요한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Beker(Case C-168/11) 사례에서 법원은 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고 강조하였고, Itelcar(Case C-282/12)과 Kronos(Case C-47/12) 사례에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주주가 중요한 영향력을 필연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두 결정을 참고하는 다른 판례들을 검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있는 경우([2003] OJ L007/41)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세 시스템에 관한 지침 90/435/EEC를 수정한 2003년 12월 22일 자문위원회 지침 2003/123/EC
3. 관계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있는 경우([2003] OJ L157/49)에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세 시스템에 관한 2003년 6월 3일 자문위원회 지침 2003/49/EC
4. Scheuten Solar Technology (Case C-397/09)
5.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7조
6. 직접적인 비즈니스 과세에 관한 방안에 국가 보조금 규정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고시[1998]OJ C384/3
7.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Article 107(3)(e).

별첨 B

각기 다른 기준 고정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데이터

도표 B.1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을 제외한 다국적(MNC) 및 비다국적(Non-MNC) 기업에 대한 도표, 2009-2013  
이자공제제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비율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 공제한도 비율	2009		2010		2011		2012		2013	
	Non-MNC	MNC	Non-MNC	MNC	Non-MNC	MNC	Non-MNC	MNC	Non-MNC	MNC
5%	59%	56%	57%	51%	57%	52%	57%	54%	56%	53%
10%	47%	41%	44%	35%	44%	37%	45%	39%	43%	38%
15%	37%	30%	34%	25%	35%	27%	36%	29%	34%	29%
20%	29%	23%	27%	19%	28%	20%	29%	23%	28%	23%
25%	24%	18%	22%	14%	23%	16%	25%	18%	22%	18%
30%	20%	14%	17%	11%	19%	13%	20%	15%	19%	14%
35%	16%	12%	14%	9%	16%	11%	17%	12%	16%	12%
40%	13%	9%	12%	7%	13%	9%	14%	11%	13%	10%
45%	11%	8%	9%	6%	11%	7%	12%	9%	11%	8%
50%	9%	7%	8%	5%	9%	6%	11%	8%	10%	7%
55%	8%	6%	7%	4%	8%	5%	9%	7%	9%	6%
60%	7%	5%	6%	4%	7%	4%	8%	6%	7%	6%
65%	6%	5%	5%	3%	6%	4%	7%	5%	7%	5%
70%	6%	4%	5%	3%	5%	4%	6%	5%	6%	5%
75%	5%	4%	4%	3%	5%	3%	5%	5%	6%	4%
80%	5%	3%	4%	2%	5%	3%	5%	4%	5%	4%
85%	4%	3%	4%	2%	4%	3%	4%	4%	5%	4%
90%	4%	3%	3%	2%	4%	3%	4%	3%	5%	3%
95%	4%	3%	3%	2%	3%	2%	4%	3%	4%	3%
100%	3%	3%	3%	2%	3%	2%	4%	3%	4%	3%
기업수	6,472	10,911	6,675	11,372	6,631	11,165	6,547	11,015	6,523	10,908

Source: PwC calculations based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from Standard & Poor's GlobalVantage database.

도표 B.2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을 제외한  
다국적(MNC) 및 비다국적(Non-MNC) 기업에 대한 도표,  
2009-2013

이자공제제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비율

도표 B.3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을 제외한  
다국적(MNC) 및 비다국적(Non-MNC) 기업에 대한 도표,  
2009-2013

원칙적으로 제3자이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는  
기업의 비율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 공제한도 비율	2009-2013 평균	
	Non-MNC	MNC
5%	57%	53%
10%	45%	38%
15%	35%	28%
20%	28%	22%
25%	23%	17%
30%	19%	13%
35%	16%	11%
40%	13%	9%
45%	11%	8%
50%	9%	7%
55%	8%	6%
60%	7%	5%
65%	6%	4%
70%	6%	4%
75%	5%	4%
80%	5%	3%
85%	4%	3%
90%	4%	3%
95%	4%	3%
100%	3%	3%

Source: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data in Table B.1.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 공제한도 비율	2009-2013 평균	
	Non-MNC	MNC
5%	43%	47%
10%	55%	62%
15%	65%	72%
20%	72%	78%
25%	77%	83%
30%	81%	87%
35%	84%	89%
40%	87%	91%
45%	89%	92%
50%	91%	93%
55%	92%	94%
60%	93%	95%
65%	94%	96%
70%	94%	96%
75%	95%	96%
80%	95%	97%
85%	96%	97%
90%	96%	97%
95%	96%	97%
100%	97%	97%

Source: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data in Table B.1.

도표 B.4 EBITDA가 마이너스인 기업을 제외한 다국적(MNC) 및 비다국적(Non-MNC) 기업에 대한 도표, 2009-2013  
이자공제제한에 영향을 받은 다국적 기업의 비율

EBITDA 대비 순이자비용 공제 한도 비율	2009		2010		2011		2012		2013	
	Small Cap	Large Cap	Small Cap	Large Cap	Small Cap	Large Cap	Small Cap	Large Cap	Small Cap	Large Cap
5%	57%	56%	51%	51%	52%	48%	54%	53%	53%	54%
10%	42%	35%	36%	27%	37%	27%	40%	27%	39%	28%
15%	32%	20%	26%	15%	28%	15%	30%	16%	30%	17%
20%	24%	13%	20%	9%	21%	8%	24%	10%	24%	10%
25%	19%	8%	15%	5%	17%	5%	19%	6%	19%	7%
30%	15%	6%	12%	3%	14%	3%	16%	4%	15%	4%
35%	12%	4%	10%	2%	11%	2%	13%	2%	12%	3%
40%	10%	3%	8%	2%	9%	1%	11%	2%	10%	2%
45%	9%	3%	6%	1%	8%	1%	10%	1%	9%	1%
50%	7%	2%	5%	1%	7%	1%	8%	1%	8%	1%
55%	6%	2%	5%	0%	6%	0%	7%	1%	7%	1%
60%	6%	1%	4%	0%	5%	0%	6%	1%	6%	1%
65%	5%	1%	3%	0%	4%	0%	6%	1%	6%	1%
70%	4%	1%	3%	0%	4%	0%	5%	1%	5%	0%
75%	4%	1%	3%	0%	4%	0%	5%	0%	5%	0%
80%	4%	1%	3%	0%	3%	0%	4%	0%	4%	0%
85%	4%	0%	2%	0%	3%	0%	4%	0%	4%	0%
90%	3%	0%	2%	0%	3%	0%	4%	0%	4%	0%
95%	3%	0%	2%	0%	3%	0%	4%	0%	3%	0%
100%	3%	0%	2%	0%	3%	0%	3%	0%	3%	0%
Observations	8,745	872	9,453	1,018	9,765	949	9,794	1,050	9,635	1,157

Source: PwC calculations based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from Standard & Poor's GlobalVantage database.

## 별첨 C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

216.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은 현재 독일과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아래의 설명은 독일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217. 이 규정에 따르면, 고정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집단의 구성원 중 자기자본/총자산 비율이 기업집단의 동 비율과 동일하거나(2퍼센트 포인트 오차범위 이내) 초과함을 입증하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집단보다 비율이 낮은 기업에게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입수준이 기업집단보다 높은 기업은 기업집단의 비율까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218. 이러한 목적상, 기업집단은 기업이 IFRS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연결되거나, 기업의 재무상 또는 사업상 의사결정이 다른 기업들의 의사결정과 함께 지배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또한 기업집단은 기업들이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에 존재한다.

219.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은 IFRS에 따라 작성된 기업집단의 연결 재무제표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EU 회원국의 상법 또는 미국 GAAP에 따라 작성된 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사용될 수도 있다. 기업집단이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들로 구성된 경우에도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220. 기업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혹은, 기업 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이 사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정항목은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자본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21. 기업의 자본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조정되어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영업권을 기업의 사업에 귀속되는 정도까지 가산
-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평가조정
-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차감(우선주는 제외)



-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차감

222. 기업의 총자산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조정된다.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영업권을 기업의 사업에 귀속되는 정도까지 가산
-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평가조정
-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차감
- 연결재무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한 동일한 금액의 부채와 대응되는 금융적 청구권(financial claims)을 차감

223. 또한 독일의 조세회피방지(anti-avoidance) 규정은 해당 대차대조표 직전 6개월 동안 출자된 자금 중 해당 대차대조표일 직후 6개월 동안 회수되거나 배분된 자금을 기업의 자본액과 총자산액에서 차감될 것을 규정한다.

224. 기업이 자본비교규정(equity escape rule)의 요건을 충족하여도, 기업집단 외부의 주주로부터 지급된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비용이 기업집단의 총 순이자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는 자금이 (i) 25% 주주(직간접적 주식보유), (ii) 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iii) 2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한 기업으로부터 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 별첨 D 예시

### 예시 1: 고정된 부채자본비율(debt/equity ratio)에 근거한 과소자본규정

225.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간단한 기업집단 구조를 가정한다. 자회사는 1.5:1의 부채자본비율에 근거한 과소자본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의 거주법인이다. 1사업연도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한 7억 5,000만 달러(USD)의 차입금과 3억 7,500만 달러<sup>1</sup>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는 내부차입금에 대해 2%의 이자, 즉 1,5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자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은 기준 고정비율인 1.5:1을 초과하는 2:1에 해당하여, 자회사는 375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1,125만 달러의 이자비용을 공제하였다.

226. 이자비용의 공제 부인을 회피하기 위해, 2사업연도에 자회사는 모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였다. 자회사는 조달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모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대여는 이자율 1%의 단기성 대여로, 자회사는 1,250만 달러의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자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이 기준 고정비율인 1.5:1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자회사는 이자비용의 부인 없이 1,375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하였다.

227. 3사업연도의 경우, 자회사는 1억 달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모회사로부터 1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차입하였다. 추가적인 차입은 이자율 2%의 중기성 차입에 해당한다. 자회사는 모회사에게 1%의 이자율로 2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였다. 자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이 기준 고정비율을 준수함에 따라, 자회사는 이자비용의 부인 없이 1,425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하였다.

228. 마지막으로 4사업연도의 경우, 자회사는 4억 5,000만 달러의 기존 차입금을 정상이자율 5%의 장기성 후순위차입(subordinated loan)으로 전환하였다. 자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이 기준 고정비율을 준수함에 따라, 자회사는 이자비용의 부인 없이 2,775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하였다.

229. 자회사의 순이자비용 공제액은 1사업연도의 4사업연도의 사이에 1,125만 달러에서 2,775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활동은 증가하지 않았다. 2사업연도에서 4사업연도까지 자회사는 고정된 부채자본비율에 근거한 과소자본규

정을 완전히 준수하였다.

230.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anti-avoidance)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 예시2: 모범 접근방식과 기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의 통합

231. 제1장에 언급되었듯, 국가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과 관련된 특정 위험에 대응하거나 그 밖의 조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 권고되는 방식과 그 외의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모범 접근방식과 그 외의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국가들은 이 외에도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32. 이 예시에서, X국은 기업의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처음의 세 부분은 이자를 이용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부분은 보다 광범위한 조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업의 이자비용공제를 EBITDA의 20%로 제한하는 고정비율 한도규정. 이 규정은 다국적 기업집단 또는 국내 기업집단의 구성원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이 예시에서, X국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단독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장에 따르면, 국가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단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2.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20%보다 높을 경우, 순이자비용을 해당 비율까지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그룹비율 한도규정.
3. 이자를 이용한 특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 이 규정은 단독기업에 의한 위험에 대응한다. 일부 특정규정은 다국적 기업집단 또는 국내 기업집단의 구성원인 기업이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4. 모든 기업들(모든 기업집단 내 기업 및 단독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상한을 EBITDA의 30%로 설정. 이 규정은 이자를 이용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 유리한 세무상 취급을 완화하고자 한다.

233. 이러한 접근방식을 아래의 도표 D.1에서 요약한다.

도표 D.1 모범 접근방식과 기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의 통합

	다국적 기업집단 내 기업	국내 기업집단 내 기업	단독기업
고정비율 한도규정 (EBITDA의 20%)	✓	✓	-
그룹비율 한도규정	✓	✓	-
특정위험 대응을 위한 특정규정(targeted rules)	✓	✓	✓
순이자비용 공제상한(EBITDA의 30%)	✓	✓	✓

234. X국이 이러한 규정들을 다섯 개의 회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에서 제시한다.

도표 D.2 모범 접근방식과 기타 일반적인 이자한도규정의 적용

	A Co USD	B Co USD	C Co USD	D Co USD	E Co USD
EBITDA	1억	1억	1억	1억	1억
순이자비용	(1,500만)	(2,800만)	(3,300만)	(3,000만)	(3,500만)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10%	25%	35%	n/a	n/a

235. A Co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다. A Co의 순이자비용은 1,500만 달러이며 EBITDA는 1억 달러이다. A Co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20%보다 낮기 때문에, A Co는 순이자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특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36. B Co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다. B Co의 순이자비용은 2,800만 달러이며 EBITDA는 1억 달러이다. B Co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20%보다 높기 때문에,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B Co의 순이자비용 공제를 2,000만 달러로 제한한다. 그러나, B Co가 속한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25%이므로, B Co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순이자비용 2,5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순이자비용 300만 달러는 부인된다. 특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37. C Co는 국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다. C Co의 순이자비용은 3,300만 달러이며 EBITDA는 1억 달러이다. C Co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20%보다 높기 때문에,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C Co의 순이자비용 공제를 2,000만 달러로 제한한다. 그러나, C Co가 속한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35%이므로, C Co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더욱 많은 이자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집단의 비율이 순이자비용 공제상한보다 높기 때문에, C Co의 순이자비용 공제는 EBITDA의 30%로 제한된다. 따라서, C Co는 순이자비용 3,0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순이자비용 300만 달러는 부인된다. 특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38. D Co는 단독기업으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다. D Co는 기업의 보통주 100%를 보유하는 개인에 의해 지배된다. D Co의 순이자비용은 3,000만 달러이며 EBITDA는 1억 달러이다. 해당 순이자비용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야기하는 거래(D Co에게 조달된 자금이 없는 '가공의 차입(artificial loan)' 등)에 대해 지급된 5백만 달러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D Co는 단독기업이므로,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D Co는 단독기업에 의한 특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과 EBITDA의 30%로 설정된 순이자비용 공제상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D Co는 순이자비용 2,5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500만 달러는 부인된다.

239. E Co는 단독기업으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다. E Co의 순이자비용은 3,500만 달러이며 EBITDA는 1억 달러이다. E Co는 단독기업이므로,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E Co는 특정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규정(이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과 EBITDA의 30%로 설정된 순이자비용 공제상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E Co는 순이자비용 3,0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순이자비용 500만 달러는 부인된다.

240. 이자한도규정을 도입하거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함에 있어, 국가는 그 밖의 법률상 또는 헌법상 의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EU 회원국들은 EU법상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예시 3: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

241. A Co와 A Co의 자회사인 B Co는 2015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A Co는 5%의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5,000만 달러(USD)의 사채를 발행한다.

2. A Co는 제3자(은행)와 이자율 스왑거래를 체결한다. 이 거래에서 A Co는 고정 이자를 수취하고 명목원금인 5,000만 달러에 대해 변동이자를 지급한다.

3. B Co는 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로 1,000만 달러를 차입한다.

4. B Co의 은행차입금은 A Co가 보증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B Co는 A Co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또한 B Co는 단기간에 대해 50만 달러까지 예고 없이 차입할 수 있는 단기 신용편의(credit facility)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다. B Co는 신용편의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6. B Co는 자사의 사업 용도를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에 대해 금융리스 거래를 체결한다.

7. A Co는 새로운 사무실 비품(office equipment)에 대해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다.

8. B Co는 향후 3년동안 연간 1,000만개의 부품(widget)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B Co의 이행은 A Co가 보증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B Co는 A Co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9. B Co는 부품생산의 주재료인 알루미늄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알루미늄 선물계약을 매입한다.

10. A Co는 보통주 주주에게 100만 달러의 배당을 의결하고 지급한다.

242. A Co와 B Co가 1, 2, 3, 4, 5, 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차입에 대한 이자,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급금, 혹은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7, 8, 9, 10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 패턴에 근거할 때)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시 4: 고정비율 한도규정(15%의 순이자비용/EBITDA 기준비율)

도표 D.3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운용

	개별기업 과세		기업집단 과세	
	A1 Co USD	A2 Co USD	총 USD	A1 Co + A2 Co USD
고정비율 한도규정 적용 전 과세소득(손실)	7,000만	1,000만	8,000만	8,000만
+ 순이자비용	+ 1,000만	+ 5,000만	+ 6,000만	+ 6,000만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 2,000만	+ 4,000만	+ 6,000만	+ 6,000만
= 세무상 EBITDA	= 1억	= 1억	= 2억	= 2억
x 기준 고정비율	x 15%	x 15%	-	x 15%
=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	= 1,500만	= 1,500만	-	= 3,000만
부인되는 이자비용	0	3,500만	3,500만	3,000만

243. 도표 D.3에서,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현지 기업집단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기업집단 과세제도), A1 Co와 A2 Co는 총 3천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된다. 그러나, 개별기업 과세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3,500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된다(A2 Co에서 부인). 이는 A1 Co에서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하였으며, A1 Co에서 A2 Co로 공제한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 예시는 규정이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준다(기업집단 내에서 공제한도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은 발생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예시와 같이, 규정을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은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도표 D.4 손실이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 과세		기업집단 과세	
	A3 Co USD	A4 Co USD	Total USD	A3 Co + A4 Co USD
고정비율 한도규정 적용 전 과세소득(손실)	1억	(1억5,000만)	(5,000만)	(5,000만)
+ 순이자비용	+ 2,000만	+ 2,000만	+ 4,000만	+ 4,000만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 3,000만	+ 3,000만	+ 6,000만	+ 6,000만
= 세무상 EBITDA	= 1억5,000만	= 1억	= 5,000만	= 5,000만
x 기준 고정비율	x 15%	x 15%	-	x 15%
=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	= 2,250만	= 0	-	= 750만
부인되는 이자비용	0	2,000만	2,000만	3,250만

244. 고정비율 한도규정이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하나가 손실발생기업인 경우, 부인되는 이자비용은 규정이 개별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 부인되는 이자비용보다 크다. 도표 D.4에서, A3 Co와 A4 Co가 기업집단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될 경우 총 3,250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된다. 그러나, 그들이 개별기업 과세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총 2천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된다(A4 Co에서 부인). 이는 A4 Co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A3 Co의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 예시 5: 범위(corridor)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요소의 적용

245. 제6장에 따르면, 국가는 10%에서 30% 사이의 적정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제6장에서 제시하는 요소들과 그 외의 관련 요소들을 적용할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한 접근방식을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는 A국, B국, C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이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접근방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246. A국은 제6장에서 제시된 각 요소를 아래와 같이 고려한다.

1. A국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함께 운용하고자 한다.
2. A국은 부인된 이자비용의 소급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자 한다.
3. A국은 Action 4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타 세무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4. A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자율이 높지 않다.
5. 각기 다른 형태의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6. A국은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고정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247. 아울러, A국은 분석을 통해 A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들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A국은 이자를 이용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248. A국은 1부터 5까지의 요소들과 그 외의 요소들이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어떠한 요소도 높은 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국은 도형 D.1에서 나타난 범위 내에서 보다 낮은 비율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49. B국은 제6장에서 제시된 각 요소를 아래와 같이 고려한다.

1. B국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함께 운용하고자 한다.
2. B국은 공제한도 미달액에 대해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자 한다.
3. B국은 Action 4에서 논의되는 여러 위험들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타 세무규정을 도입 중에 있다.
4. B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자율이 다소 높다.
5. 다국적 기업집단 및 국내 기업집단 내 기업 및 단독기업에 대해 동일한 고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
6. B국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일의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고정비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250. B국은 상기의 요소들 외에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251. B국은 요소 1과 2는 낮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요소 3부터 5는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B국은 (i) 기타 세무규정이 Action 4에서 논의되는 일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에 대응하나 일부 위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ii) B국의 이자율이 다른 국가들의 이자율보다 다소 높으나 상당히 높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소 3과 4에 대해 낮은 비중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52. 따라서 B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 적정 범위 내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도형 D.1에서 나타난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다른 기업집단의 비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낮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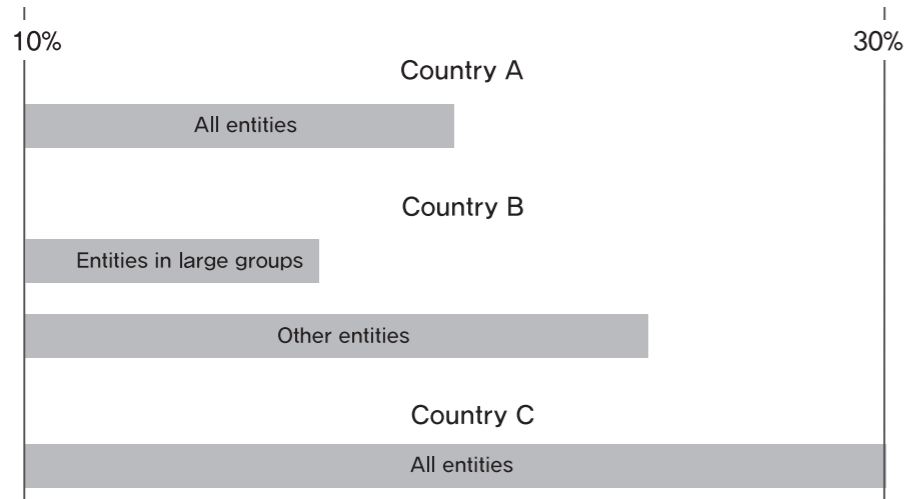
253. C국은 제6장에서 제시된 각 요소를 아래와 같이 고려한다.

1. B국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그룹비율 한도규정과 함께 운용하고자 한다.
2. B국은 공제한도 미달액에 대해 무기한 이월공제 허용하고자 한다.
3. B국은 Action 4에서 논의되는 여러 위험들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타 세무규정을 도입 중에 있다.
4. B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자율이 다소 높다.
5. 다국적 기업집단 및 국내 기업집단 내 기업 및 단독기업에 대해 동일한 고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
6. B국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일의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고정비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254. 아울러, C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과 관련이 없는 제3자 대출(third party lending)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적용한다.

255. C국은 1부터 5까지의 요소들과 그 외의 요소들에 미루어볼 때 높은 기준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어떠한 요소도 낮은 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C국은 기준 고정비율을 10%에서 30% 사이에서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형 D.1 적정 범위 내에서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요소의 적용



## 예시 6: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

256. 아래의 예시 6a부터 6c는 기준 고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이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기반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까지 더욱 많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257. 이 예시에서, A Co는 A국의 거주법인이다. A국은 제6장에서 논의된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하며 기준 고정비율은 20%로 설정한다. A Co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원이다. A Co와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과 EBITDA는 아래의 도표 D.5와 같다.

## 도표 D.5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

	순이자비용 USD	EBITDA USD
A Co	(1,000만)	3,000만
기업집단	(1억)	4억

## 예시 6a - A국이 고정비율 한도규정만을 적용하는 경우

258. 이 예시에서, A국은 기준 고정비율 20%의 고정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한다. A국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59.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EBITDA 3,000만 달러에 기준 고정비율 20%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600만 달러가 된다. A Co의 순이자비용 1,0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는 공제되고 400만 달러는 부인된다.

## 예시 6b - A국이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260. 이 예시에서, A국은 기준 고정비율 20%의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국은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에 대해 추가비율(uplift)을 부여하지 않는다.

261.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EBITDA 3,000만 달러에 기준 고정비율 20%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600만 달러가 된다.

262.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 Co는 우선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1억 달러와 EBITDA 4억 달러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계산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비율은 25%가 된다. A Co는 기업집단의 비율을 자사의 EBITDA 3,000만 달러에 적용한다. 따라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750만 달러가 된다.

263.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A Co의 이자공제한도가 더욱 높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A Co의 순이자비용 총액 1,000만 달러 중 750만 달러가 공제되고 250만 달러는 부인된다.

## 예시 6c - A국이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하면서 제3자 순이자비용에 대해 10% 상향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264. 이 예시에서, A국은 기준 고정비율 20%의 고정비율 한도규정과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에 근거한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국은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에 대해 10%의 추가비율(uplift)을 부여한다.

265.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EBITDA 3,000만 달러에 기준 고정비율 20%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고정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600만 달러가 된다.

266.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A Co는 우선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계산한다. 이는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조정액 1억 1,000만 달러(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 1억 달러에 대해 10%의 상향조정을 적용한 금액)와 기업집단의 EBITDA 4억 달러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비율은 27.5%가 된다. A Co는 기업집단의 비율을 자사의 EBITDA 3,000만 달러에 적용한다. 따라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825만 달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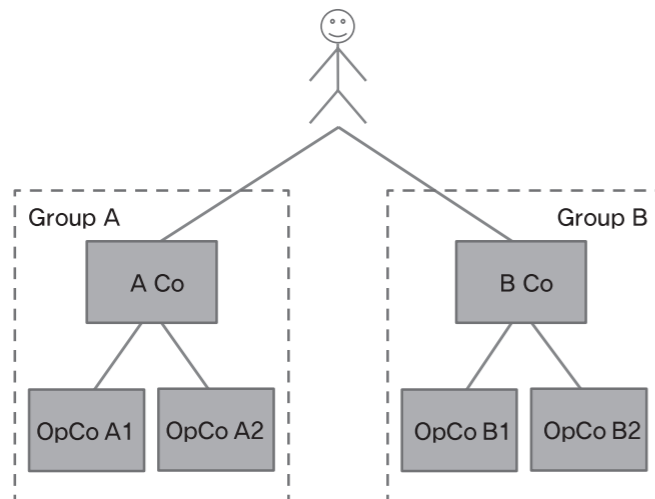
267. 그룹비율 한도규정에 따른 A Co의 이자공제한도가 더욱 높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A Co의 순이자비용 총액 1,000만 달러 중 825만 달러가 공제되고 175만 달러는 부인된다.

**예시 7: 그룹비율 한도규정에서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정의**

268. 아래의 예시 7a부터 7e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적용 목적상 기업집단의 정의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예시 7a - 기업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도형 D.2 기업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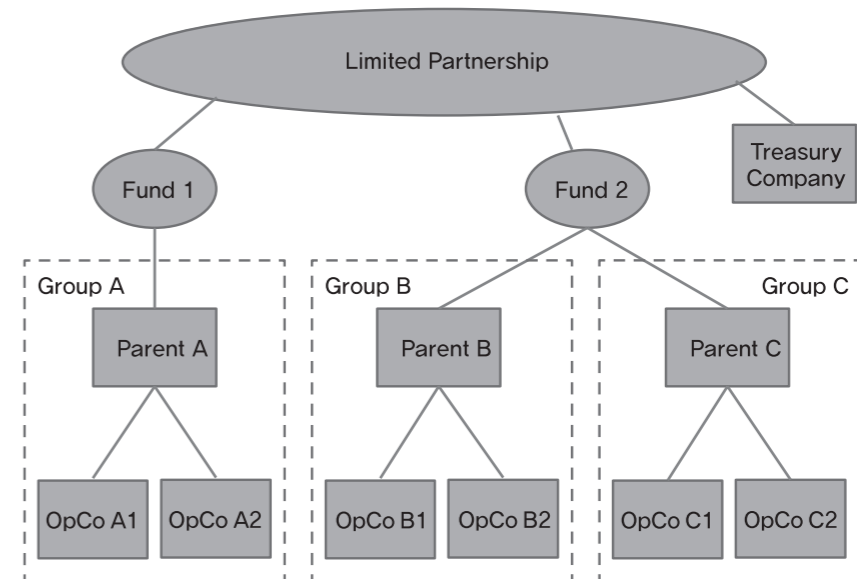


269. 도형 D.2에서, 개인은 A Co와 B Co의 주식자본(share capital)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A Co와 B Co는 각자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A Co와 B Co는 각 지주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양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기업은 없다). 개인은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두 개의 기업집단이 존재한다. 기업집단(Group) A는 A Co 및 A Co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하며, 기업집단 B는 B Co 및 B Co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한다.

270.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related) 개인 및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예시에서, 기업집단 A는 개인 및 기업집단 B에 포함된 기업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집단 B는 개인 및 기업집단 A에 포함된 기업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예시 7b - 기업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도형 D.3 기업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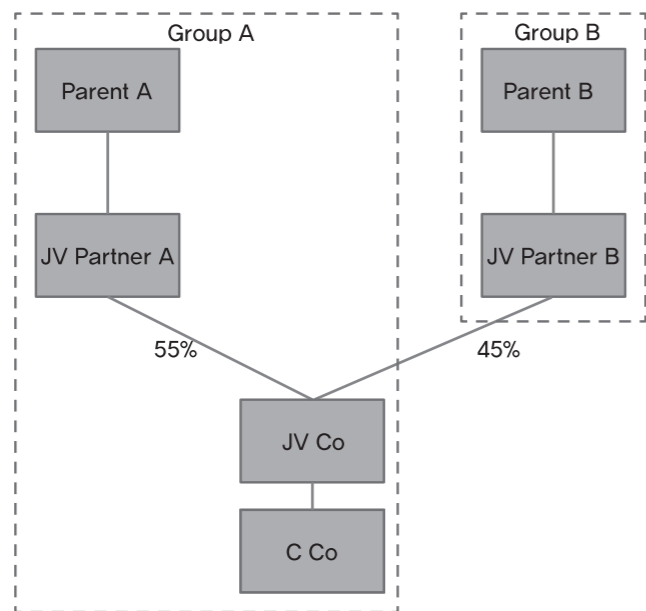


271. 유한파트너십과 같은 법인이 아닌 기구(non-corporate vehicle)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기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집단은 기업집단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업집단은 유한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이 투자를 위해 설립한 펀드, 그러한 기구에 의해 지배되는 기타 기업집단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도형 D.3에서, 기업집단 A, 기업집단 B, 기업집단 C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별개 기업집단으로 취급된다. 단, 유한파트너십, 하위펀드(sub-funds) 및 재무법인(treasury company)은 이러한 목적상 어떠한 기업집단의 구성원도 되지 않는다.

272. 유한합자회사, 하위펀드(sub-funds) 및 재무법인(treasury company)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집단 A, 기업집단 B, 기업집단 C 각각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각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간주된다(기업집단 A의 기업들은 기업집단 B 및 기업집단 C의 기업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예시 7c -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ity)이 투자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도형 D.4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ity)이 투자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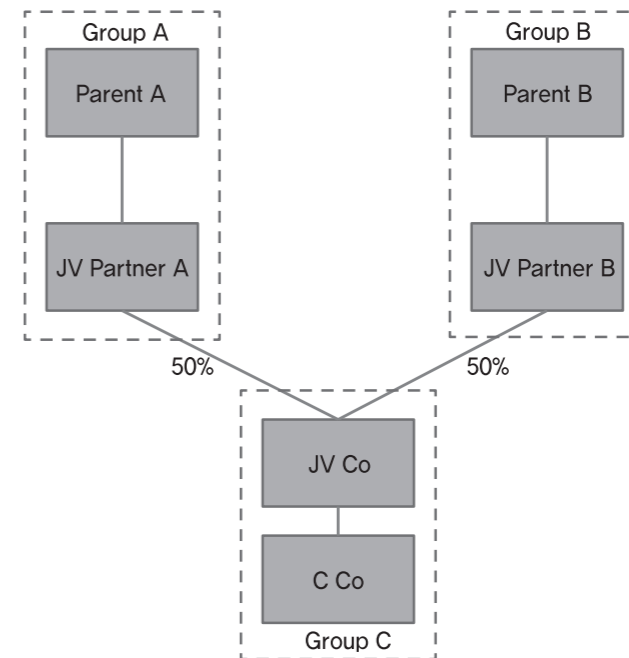


273. 합작투자기업이 합작투자 파트너 중 한 기업에게 지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합작투자기업은 지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합작투자기업은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지배그룹의 구성원이 된다. 도형 D.4에서, 합작투자 파트너(JV Partner) A는 합작투자기업(JV Co)에 대해 55%의 지분을 소유한다. 이 경우, 합작투자기업과 그 자회사는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기업집단 A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274. 합작투자 파트너 B와 합작투자기업은 동일 기업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러나 합작투자 파트너 B가 합작투자기업에 대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므로, 양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제9장의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따름).

예시 7d - 합작투자기업이 투자그룹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경우

도형 D.5 합작투자기업이 투자그룹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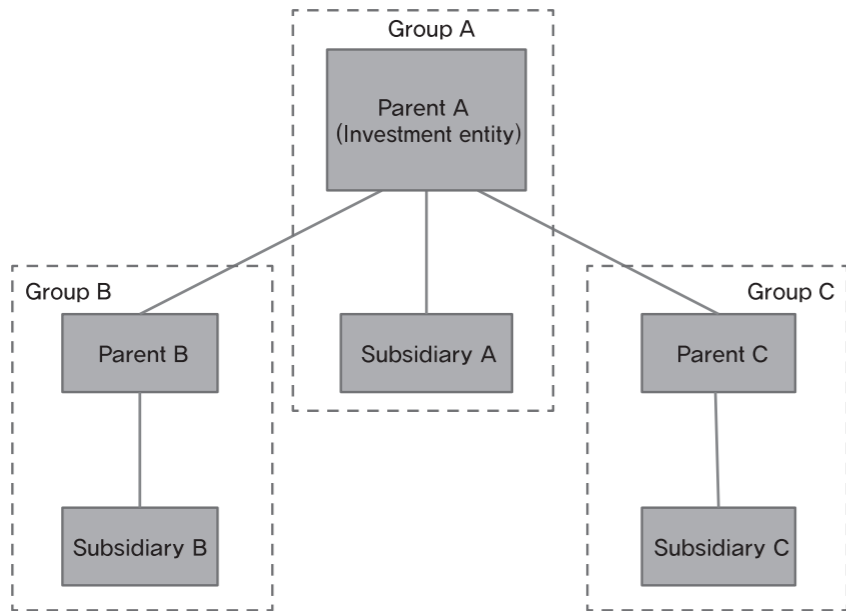




275. 어떠한 파트너도 합작투자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각 투자그룹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합작투자기업을 각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킬 것이다. 합작투자기업은 어떠한 투자그룹에도 연결되지 않으며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목적상 투자그룹의 구성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형 D.5에서, 합작투자 파트너 A와 파트너 B는 합작투자기업에 대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며, 하나의 파트너에 대해 지배권을 부여하는 기타 계약(arrangements)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작투자기업과 그 자회사는 기업집단 A 또는 기업집단 B의 구성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합작투자기업과 그 자회사는 별개 기업집단(기업집단 C)을 형성할 것이다. 단, 합작투자기업은 합작투자 파트너 A 및 파트너 B와 특수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예시 7e - 지주회사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인 경우**

도형 D.6 지주회사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인 경우



276. 도형 D.6에서, 모회사(Parent) A는 투자기업으로, 세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모회사 A는 지주구조의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277. 자회사(Subsidiary) A는 모회사 A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며, 모회사 A의 연결재무제표에 연결되어 있다.

278. 모회사 B와 모회사 C는 자본가치 상승(capital appreciation) 및 투자소득의 목적상 모회사 A에 의해 소유된다. 그들은 모회사 A의 연결재무제표에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279. 모회사 A와 자회사 A는 그룹비율 한도규정 목적상 기업집단 A를 형성한다. 모회사 B와 모회사 C는 기업집단 A의 구성원이 아니다. 대신, 각 기업은 각자의 자회사와 함께 별개 기업집단(기업집단 B와 기업집단 C)을 형성한다.

**예시 8: 기업집단의 비율을 기업의 세무상 EBITDA 또는 회계상 EBITDA에 대해 적용**

280. 제7장에 따르면, 그룹비율 한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EBITDA는 세무상 또는 회계상 원칙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각 접근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이를 하기의 예시 8a에서 8c에서 논의한다.

도표 D.6 기업집단의 비율을 기업의 세무상 EBITDA 또는 회계상 EBITDA에 대해 적용

	회계상(Financial reporting)		세무상(Tax)	
	순이자비용 USD	EBITDA USD	순이자비용 USD	EBITDA USD
기업집단	(1억)	10억	n/a	n/a
A Co	(2,000만)	1억	(1,800만)	8,000만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 (USD 1억 / USD 10억) x 100 = 10%				

**예시 8a - EBITDA를 세무상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281. 이 예시에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10%를 A Co의 세무상 EBITDA 8,000만 달러에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 한도는 A Co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A Co의 순이자비용 총액 1,800만 달러 중 800만 달러가 공제되고 1,000만 달러가 부인된다.

282. 세무상 원칙에 따라 EBITDA를 계산하는 방식은 고정비율 한도규정에서 권고되는 방식과 부합한다. 또한 이 방식은 기업집단이 적용하고 과세당국이 조사하기에 간단하며,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함에 있어 기업의 이자비용공제를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 수준과 연계시킨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기업의 과세소득이 회계상 소득보다 높을 경우, 해당 기업의 이자공제한도가 인상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이행한다면, 해당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 예시 8b - EBITDA를 회계상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283. 이 예시에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 10%를 A Co의 회계상 EBITDA 1억 달러에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 한도는 A Co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A Co의 순이자비용 총액 1,8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가 공제되고 800만 달러가 부인된다.

284. 이 방식에서 이자공제한도는 회계정보만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이는 기업집단이 적용하고 과세당국이 조사하기에 간단하다. 그러나, 회계규정과 세무규정에 따른 순이자비용 계산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만일 기업이 세무 목적상 적용하는 이자의 정의가 회계 목적상 적용하는 이자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다면, (이자공제한도가 보다 한정적인 회계상 정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이자비용의 상당액이 부인될 수 있다.

#### 예시 8c - 회계 목적상 이자의 정의와 세무 목적상 이자의 정의 간 차이에 대해 회계상 원칙에 따른 이자공제한도를 조정

285. 이 예시는 기업의 세무상 순이자비용과 회계상 순이자비용 간 차이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방식을 설명한다. 이 접근방식에 따르면, 예시 8b에서 회계상 원칙에 따라 계산된 이자공제한도는 기업의 회계상 순이자비용과 대조되어, 전체 이자비용 중 한도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의 비율을 결정한다. 비율이 100%일 경우(즉, 기업의 회계상 순이자비용 전액이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은 부인되는 이자비용은 없이 전액 공제될 수 있다.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기업의 세무상 이자비용의 동 비율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된다(만일 기업의 회계상 순이자비용의 90%가 한도에 포함된다면, 기업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의 90%가 공제된다).

286. 이 방식을 A Co에 대해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인 10%는 A Co의 회계상 EBITDA인 1억 달러에 대해 적용되어, 1,000만 달러의 회계상 이자공제한도를 도출한다. 이 한도를 A Co의 회계상 순이자비용인 2,000만 달러와 대조한다. 이자비용의 50%가 한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비율은 A Co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A Co의 세무상 순이자비용 총액인 1,800만 달러 중 900만 달러가 공제되고 900만 달러가 부인된다.

287. 이 방식을 예시 8b의 방식과 비교할 때, 기업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이 회계상 순이자비용보다 높을 경우, 기업에게 허용되는 이자공제한도는 증가될 것이다. 반대로, 기업의 세무상 순이자비용이 회계상 순이자비용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이자공제액은 감소될 것이다. 회계상 이자공제한도가 기업의 회계상 순이자비용과 세무상 순이자비용 간 차액을 반영하도록 조정되는 것이다.

#### 예시 9: 기업집단 내 손실발생기업에 대응

##### 예시 9a - 손실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도표 D.7 손실이 그룹비율 한도규정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A Co USD	B Co USD	C Co USD	기업집단 USD
EBITDA	1억	1,000만	1억	1,000만
순이자비용	(2,000만)	(200만)	1,000만	(1,200만)
기업집단의 이자비용 /EBITDA 비율	-	-	-	120%
이자공제한도	1억 2,000만	1,200만	0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2,000만)	(200만)	0	-
부인되는 이자비용	-	-	-	-
공제한도 미달액	1억	1,000만	-	-

288. 도표 D.7에서, A Co의 EBITDA는 1억 달러이며 순이자비용은 2,000만 달러이다. B Co의 EBITDA는 1,000만 달러이며 순이자비용은 200만 달러이다. 그러나 C Co의 EBITDA는 마이너스 1억 달러이며(손실) 1,000만 달러의 순이자소득이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보면, 총 EBITDA는 1,000만 달러이며 1,200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120%이다.

289. 이처럼 높은 기업집단의 비율은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첫 번째, 당기에 A Co는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보다 높은 1억 2,000만 달러를 배분 받는다. 이는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보다 많은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A Co와 B Co가 당기에 발생한 순이자비용을 공제한 이후에도, 상당 수준의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한다.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미래기간으로 이월되어 추가적인 이자비용 공제를 가능하게 한다.

290. 이러한 문제는 (EBITDA가 마이너스 1억 달러인) C Co가 마이너스 1억 2,000달러의 이자공제한도를 인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인식하는 경우라면,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이자공제한도는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일한 1,200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손실발생기업이 마이너스 이자공제한도를 인식하는 것은 모범 접근방식의 일부로 권장되지 않는다.

#### 예시 9b - 이자공제상한의 적용

도표 D.8 이자공제상한의 적용

	A Co USD	B Co USD	C Co USD	기업집단 USD
EBITDA	1억	1,000만	(1억)	1,000만
순이자비용	(2,000만)	(200만)	1,000만	(1,200만)
기업집단의 이자비용 /EBITDA 비율	-	-	-	120%
이자공제한도	1,200만	1,200만	0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1,200만)	(200만)	0	-
부인되는 이자비용	(800만)	-	-	-
공제한도 미달액	-	1,000만	-	-

291. 도표 D.8에서, 기업집단의 EBITDA와 순이자액은 예시 9a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이 경우, A Co의 이자공제한도에 대해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으로 상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200만 달러(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총액)로 제한된다. A Co는 1,200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허용된다면, 800만 달러의 부인된 이자비용을 미래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292. 이전과 동일하게, B Co는 1,200만 달러의 이자공제한도를 배분 받아 기업의 이자비용 총액인 2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만일 국가의 규정상 허용된다면, B Co는 공제한도 미달액인 1,000만 달러를 이월할 수 있다. 제7장에서 논의되었듯이, 국가들은 특히 공제한도 미달액의 이월공제를 기간 및/또는 가치 측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293. 만일 기업집단의 EBITDA가 C Co의 손실에 의해 상쇄되지 않았다면,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은 약 10.9%(1,200만 달러/1억 1,0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 경우, A Co는 약 1,090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자공제한도에 대한 상한은 A Co의 이자비용공제를 C Co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허용되는 공제수준 이하로 제한하지 않는다.

#### 예시 9c - 기업집단의 연결 EBITDA가 마이너스인 경우

도표 D.9 기업집단의 연결 EBITDA가 마이너스인 경우

	A Co USD	B Co USD	C Co USD	기업집단 USD
EBITDA	1억	1,000만	(1억 2,000만)	(1,000만)
순이자비용	(2,000만)	(200만)	1,000만	(1,200만)
기업집단의 이자비용 /EBITDA 비율	-	-	-	n/a
이자공제한도	1,200만	200만	0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1,200만)	(200만)	0	-
부인되는 이자비용	(800만)	-	-	-
공제한도 미달액	-	-	-	-

294. 도표 D.9에서, C Co는 1억 2,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집단 전반적으로 1,000만 달러의 손실(마이너스 연결 EBITDA)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집단의 특정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A Co와 B Co는 각 기업의 순이자비용과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 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공제한도를 배분 받는다.

295. A Co의 순이자비용은 2,000만 달러로, 이는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인 1,200만 달러보다 높다. 따라서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200만 달러가 된다. A Co는 1,200만 달러의 순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허용된다면, 800만 달러의 부인된 이자비용을 미래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296. B Co의 순이자비용은 200만 달러로, 이는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인 1,200만 달러보다 낮다. 따라서 B Co의 이자공제한도는 200만 달러가 된다. B Co는 이자비용 총액인 20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 미달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예시 9d -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의 EBITDA에서 손실발생기업을 제외

도표 D.10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의 EBITDA에서 손실발생기업을 제외

	A Co USD	B Co USD	C Co USD	기업집단 USD
EBITDA	1억	1,000만	(1억)	1억 1,000만
순이자비용	(2,000만)	(200만)	1,000만	(1,200만)
기업집단의 이자비용 /EBITDA 비율	-	-	-	10.9%
이자공제한도	1,090만	110만	0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1,090만)	(110만)	0	-
부인되는 이자비용	(910만)	(90만)	-	-
공제한도 미달액	-	-	-	-

297. 이 예시는 예시 9a의 경우와 동일한 사실 패턴에 근거한다. 이 예시에서 C Co의 마이너스 EBITDA는 기업집단의 EBITDA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EBITDA는 1,000만 달러가 아닌 1억 1,000만 달러가 되고, 기업집단의 순이자비용/

EBITDA 비율은 10.9%로 인하된다.

298. 이에 따라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090만 달러가 되며 B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10만 달러가 된다. 이자공제한도의 합계는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일한 1,200만 달러가 된다. C Co의 손실을 제외함으로써, 그룹비율 한도규정은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A Co와 B Co 소재 국가의 과세당국이 C Co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EBITDA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방식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할 것이다.

#### 예시 9e -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의 EBITDA에서 손실발생기업을 제외

도표 D.11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의 EBITDA에서 손실발생기업을 제외

	A Co USD	B Co USD	C Co USD	기업집단 USD
EBITDA	1억	1,000만	(1억 2,000만)	1억 1,000만
순이자비용	(2,000만)	(200만)	1,000만	(1,200만)
기업집단의 이자비용 /EBITDA 비율	-	-	-	10.9%
이자공제한도	1,090만	110만	0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1,090만)	(110만)	0	-
부인되는 이자비용	(910만)	(90만)	-	-
공제한도 미달액	-	-	-	-

299. 이 예시는 예시 9c의 경우와 동일한 사실 패턴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예시에서, C Co의 마이너스 EBITDA는 기업집단의 EBITDA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을 도출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서는 10%의 제3자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도출된다.

300. 이에 따라 A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090만 달러가 되며 B Co의 이자공제한도는 110만 달러가 된다. 이자공제한도의 합계는 기업집단의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일한

1,200만 달러가 된다. C Co의 손실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실제 제3자 순이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A Co와 B Co 소재 국가의 과세당국이 C Co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EBITDA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예시 10: 3년간의 평균 EBITDA를 이용한 고정비율 한도규정

301. 도표 D.12는 고정비율 한도규정의 경우, 일시적인 이익 감소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의 EBITDA의 3년간 이동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표 D.12 EBITDA의 3년 평균치를 이용한 고정비율 한도규정

	연도 (당해 과세연도= t)					
	t-2 USD	t-1 USD	t USD	t+1 USD	t+2 USD	t+3 USD
당기의 세무상 EBITDA를 적용						
고정비율 한도규정 적용 전 과세소득	3억 8,000만	3억 5,000만	1억	3억	3억 2,000만	3억
+ 순이자비용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 5,000만	+ 5,000만	+ 5,000만	+ 5,000만	+ 5,000만	+ 5,000만
= 세무상 EBITDA	= 5억 3,000만	= 5억	= 2억 5,000만	= 4억 5,000만	= 4억 7,000만	= 4억 5,000만
x 기준 고정비율	x 30%	x 30%	x 30%	x 30%	x 30%	x 30%
=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	= 1억 5,900만	= 1억 5,000만	= 7,500만	= 1억 3,500만	= 1억 4,100만	= 1억 3,500만
부인되는 이자비용	0	0	2,500만	0	0	0
세무상 EBITDA의 3년 평균치를 적용						
당기와 이전 2개연도의 세무상 EBITDA의 평균			4억 2,700만	4억	3억 9,000만	4억 5,700만
x 기준 고정비율			x 30%	x 30%	x 30%	x 30%
=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			= 1억 2,800만	= 1억 2,000만	= 1억 1,700만	= 1억 3,700만
부인되는 이자비용	0	0	0	0	0	0

302. 도표의 위 부분을 보면, 당기의 세무상 EBITDA를 적용함으로써 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된다. 과세연도 t의 경우,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업은 2,500만 달러의 이자비용이 부인된다. 만일 허용된다면, 기업은 부인된 이자비용을 미래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도표의 아래 부분은 공제 가능한 최대 이자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세무상 EBITDA 이동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3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이익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3년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과세연도 t에 기업의 이자비용 총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며, 과세연도 t+1와 t+2에 공제 허용되는 최대 이자비용은 당기의 세무상 EBITDA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감소된다.

## 주석

1. 이 별첨이 나타나는 모든 금전적인 금액은 미국 달러(USD)로 표기된다. 이는 단지 설명을 위한 예시들로, 특정 국가의 실제 사건 또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발행일 2015년 월 일  
저자 김선영, 김영필, 김태훈, 이기수, 류풍년, 이세화,  
정재필, 정병윤, 인영수  
발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전화 : (02) 6676-1000  
팩스 : (02) 6674-3700  
<http://www.deloitte.co.kr>

출판신고 2010년 5월 31일 제2010-000084호  
인쇄처 (주)조양애드컴 02)2269-5863  
ISBN 979-11-86892-02-2

---

본 책에 실린 내용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

본보고서의 원본은 다음의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ISBN 9789264241145/ <http://dx.doi.org/10.1787/9789264241152-en>]

원본 보고서는 2014년에 최초 발행되었으며,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OECD와의 계약에 따라 출판된 것으로, OECD의 공식적 번역본이 아닙니다.

---

[www.oecdbookshop.org](http://www.oecdbookshop.org) – OECD 온라인 서점

[www.oecd-ilibrary.org](http://www.oecd-ilibrary.org) – OECD 전자도서관

[www.oecd.org/oecddirect](http://www.oecd.org/oecddirect) – OECD 출간물 알림 서비스

